

발 간 등 록 번 호

76-5420012-000005-01



고성군의의회
Goseong county council

믿음과 희망을 주는 고성군의의회!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 보고서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

제 출 문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 귀하

본 보고서를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0월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이 보고서는 한국응용통계연구원 학술연구소가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고성군의회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차 례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장 지역여건 분석	4
1. 지역 일반현황	4
2. 지역 인구 추이	6
3. 농가 및 농업 관련 현황	7
제3장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개요	9
1.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제도 시행 이력	9
2. 고성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추진 현황	10
제4장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문제점	12
1.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문제점	12
2.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행 절차	15
3. 고성군 읍면별 외국인 근로자 수요	17
제5장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개요	18
1 법무부 관련 지침	18
1. 근거 법령	18
2. 참여대상	18
3. 유치 신청과 인원 배정	20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22

5. 공공형 사업 운영 방식	23
6.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발급	26
7. 근로조건, 인권보호 관련 고용주 준수사항	27
2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지침	33
1. 사업대상자	33
2. 운영방식	33
3. 운영조건 및 내용	34
4. 운영주체 준수사항	36
5. 기타 유의사항	37
6.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37
제6장 농촌인력중개센터	38
1. 사업개요	38
2. 주요 내용	40
3. 사업 신청 및 선정	48
4. 사업 시행 및 관리	52
5. 평가 및 환류	56
제7장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	59
1. 외국인 농업근로자 주거정책의 전환	59
2.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전개	60
3. 외국인 농업근로자 숙소 유형	61
제8장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66
1. 사업 개요	66
2. 주요 내용	67
3. 사업추진체계	70

4. 평가 및 환류	79
제9장 공공형 정책 도입을 위한 조례 검토	80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조례 현황	80
2. 여타 모범적 군부 지자체의 관련 조례 검토	82
3. 고성군의 조례 제·개정 방향 검토	99
제10장 검토 및 제안	100

【 표 차 례 】

<표 1> 고성군 읍면 현황	5
<표 2> 고성군 인구 관련 통계	6
<표 3> 고성군 경제활동인구	7
<표 4> 고성군 농가 인구 및 농가 수	7
<표 5> 고성군 경지규모별 농가 수	8
<표 6>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15
<표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식비 징수 상한액 기준	25
<표 8> 사증의 종류와 관련 사항	27
<표 9> 숙식비 징수 상한액 기준	28
<표 10> 숙식비 징수 상한액 기준	36
<표 11>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업무 범위	42
<표 12>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프로세스	45
<표 13>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비 내역	47
<표 14> 농촌인력중개센터 관련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51
<표 15>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정 기준	58
<표 16>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추진 현황	61
<표 17> 농업근로자 기숙사 사후관리 기준	78

【 그림 차례 】

[그림 1] 고성군의 지정학적 위치	4
[그림 2] 고성군의 인구 분포	5
[그림 3] 고성군의 장래 추계인구 추세	8
[그림 4] 고성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추진 흐름	10
[그림 5] 농가형 정책 시행 절차	16
[그림 6] 고성군 읍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	17
[그림 7]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세부절차 흐름도	21
[그림 8] 공공형 운영방식 개념도	34
[그림 9] 농촌인력중개센터 관련 사업 신청 및 절차 흐름도	48
[그림 10] 농촌인력중개센터 관련 추진 내용 및 일정	49
[그림 11] 사업자 선정 절차	50
[그림 12] 교부 결정 및 사업 시행 흐름	52
[그림 13] 정산 및 사후관리 흐름	54
[그림 14] 평가 및 환류 흐름도	57
[그림 15]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정 기준	58
[그림 16]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61
[그림 17] 전북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63
[그림 18] 함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63
[그림 19] 조립식 농업근로자 기숙사 모델	64
[그림 20] 폐교 활용을 위한 모델 예시	65
[그림 21]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 체계	70
[그림 22] 농업근로자 기숙사 사업신청 흐름도	71
[그림 23] 농업근로자 기숙사 사업 선정 흐름도	72
[그림 24] 농업근로자 기숙사 사업 시행 흐름도	72
[그림 25] 농업근로자 기숙사 사업 정산 단계 흐름도	76
[그림 26] 정부 공모사업의 전략적 시기 안배	102

[그림 27] 농촌인력통합지원센터 개념도106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경상남도 고성군은 2023년부터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채택·추진하여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왔으나 ‘농가형’ 정책에 기인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한계를 노정
 - 농가가 계약과 운영의 주체인데다, 주 35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맞추고 주거시설 등을 구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
- 고성군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지방소멸지역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소유 경지가 없는 영세농과 1ha 미만의 소농이 전체 농가의 81.6%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
 - 대부분의 농가가 파종기와 수확기에 맞춘 단기간 집중 노동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긴급
- 정부에서 농촌 인력과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2년부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실시하는 등 현실적 돌파구 형성
 - 때마침 2024년 9월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지역농협이 운영주체가 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
 - 이를 계기로 고성군의회 내에 정책연구회가 구성되고, 정책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고성군 실정에 맞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음

2. 연구의 목적

- 본 용역은 고성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추진을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고성군의 여건, 그간 정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추진 방향, 정부정책의 내용 및 지원사업, 국내의 모범사례를 연구하여 이른바 ‘고성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형성 및 추진을 위한 연구작업 실행
- 공공형 제도의 추진 및 정착을 위해서는, 운영주체가 될 농협의 법인, 고성군청, 고성군의회가 삼박자가 맞아야 하며, 이를 위한 협의채널 및 소통창구의 형성이 관건
 - 지역 품목 농협조합이든 공동사업조합이든 농협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며, 농협의 적극적 활동을 끌어내기 위한 연구지원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
 - 고성군청은 이미 농가형 제도의 운영주체로서 역할을 해왔고, 공공형이든 내국인 인력 소개 활동이든 군민의 삶과 지자체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므로, 거의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기
 - 아울러 공공형 정책과 농가형 정책의 정책 믹스를 위해서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고성군의회와 조례 제·개정 중요성을 부각하고 뒷받침하는 역할 수행
-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를 조망해볼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채택 및 추진은 불가피한 추세이며, 얼마나 빨리, 얼마나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화하는가 하는 점이 관건

- 고성군이 효율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에 있어 대한민국의 선도적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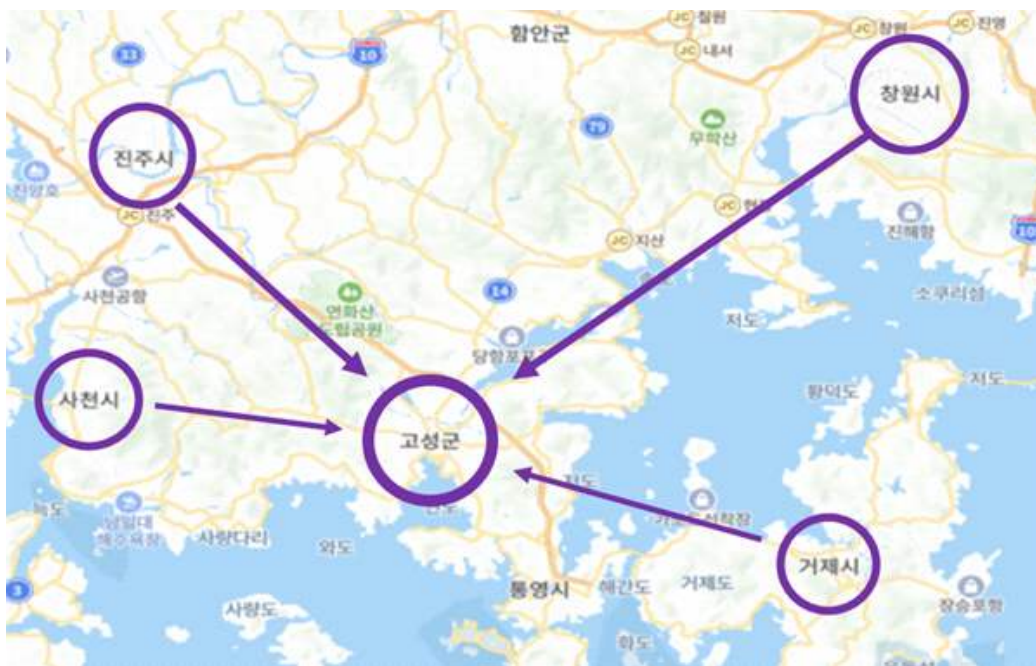
제2장 지역 여건 분석

1. 지역 일반현황

1) 자연·지리적 현황

- 경상남도 고성군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남단, 경상남도 남부 연안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거제시, 통영시,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등 5개 시가 동서남북으로 대략 1시간 이내 거리에 인접
 -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국도 14호, 33호선뿐 아니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로 교통이 편리하여 남해안의 중심 관광지로서 발전할 잠재력이 무한하며, 전원도시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은 지역
 - 기존 산업화된 지역이나 대도시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지가와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에 비교 우위성을 가지는 곳이며, 높은 문화적 전통과 역사가 자연환경과 더불어 큰 이점으로 작용

<그림 1. 고성군의 지정학적 위치>



2) 행정구역

- 고성군의 행정구역은 2023년 말 기준 1개 읍, 13개 면, 119개 법정리, 265개 행정리, 630개 반으로 구성

〈표 1. 고성군 읍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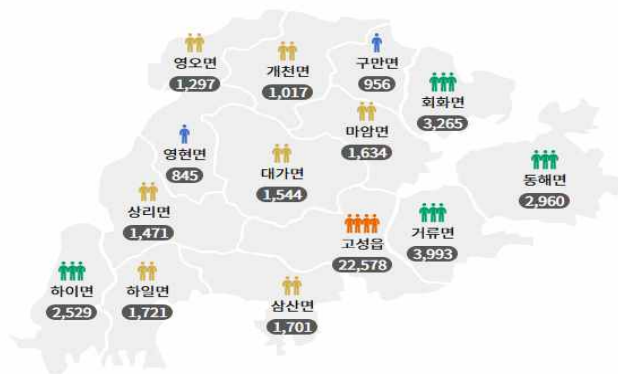
구분	면적(km ²)	리		반
		법정	행정	
계	517.95	119	265	630
고성읍	44.09	17	42	156
삼산면	35.12	6	14	35
하일면	30.98	7	15	37
하이면	38.06	8	19	35
상리면	46.00	9	17	28
대가면	52.25	9	19	40
영현면	32.17	8	16	22
영오면	22.77	7	15	28
개천면	40.45	9	17	20
구만면	22.23	6	14	21
회화면	29.67	6	16	52
마암면	33.70	9	17	41
동해면	53.87	9	22	52
거류면	36.59	9	22	63

* 자료 : 고성군 〈2024 군정백서〉

3) 인구 현황

- 2025년 6월 기준, 고성군 전체 인구는 47,511명으로 남자 24,113명과 여자 23,39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세대 수는 26,356세대

〈그림 2. 고성군의 인구 분포〉



* 자료 : 〈고성군청 홈페이지〉

2. 지역 인구 추이

1) 인구 증감

○ 주민등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4년 기준 37.2%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전국 여타 군부 지자체에 비하면 그나마 인구 감소폭은 완만한 상황

○ 등록 외국인 수는 2021년 이후 증가세로 고성군의 농가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 채택 전후 현상인지는 추적 관찰 필요

- 2023년 8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18명을 초청하였고, 2024년 하반기에는 총 42명으로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 추세

○ 주민등록인구의 경향적 감소는 전·출입 격차에 따른 사회적 감소보다는 사망과 출생의 격차로 인한 자연적 감소가 두드러진 특징

- 2022~2023년 사망과 출생의 격차는 6배에 달하나 전·출입의 경우 2022년은 전입이 전출보다 689명이 많아서 감소 추세를 거스르는 통계도 목도

〈표 2. 고성군 인구 관련 통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년대비
주민등록인구	51,361	50,478	50,448	49,468	48,005	-3,356
65세 이상 인구	16,095	16,543	17,031	17,491	17,847	+1,752
등록 외국인	1,137	1,020	1,194	1,712	-	증가 경향
평균 연령	51.2세	52.2세	53.0세	53.4세		+2.2세
전입	4,324	4,378	4,683	3,693	3,420	감소 추세
전출	4,743	4,544	3,994	3,996	4,202	년별 변동 양상
출생	139	120	92	82	-	꾸준한 감소세
사망	640	657	756	659	-	증가 추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단위: 명)

3. 농가 및 농업 관련 현황

1) 경제활동인구

- 고성군은 대도시에 인접한 지정학적 요인 때문인지 해마다 경제활동인구 규모에 큰 변동이 없는 상황

〈표 3. 고성군 경제활동인구〉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경제활동인구	30	31	30	31	30
경제활동 참가율	68.0%	68.9%	67.1%	70.1%	69.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단위: 천명)

2) 농가 현황 및 규모

- 농가인구는 비교적 완만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농가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 추세
- 2024년 12월 기준, 전체 가구 중 농가가 19.9%, 비농가가 80%를 차지

〈표 4. 고성군 농가 인구 및 농가 수〉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농가 인구수	10,373	9,862	9,745	9,844	9,657
농가수	5,271	5,205	5,209	5,370	5,38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경지규모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영세농과 소농(1.0ha 미만)이 전체 농가의 81.6%를, 중농이 10.7%, 대농이 7.7%를 차지
- 대부분의 농가가 경지 규모 상 작물 수확기에 집중된 단기 노동 수요가 클 가능성 농후

〈표 5. 고성군 경지규모별 농가 수〉

연도	경지없는 농가수	1.0ha 미만	1.0ha~2.0ha 미만	2.0ha 이상
2022년	30	4,248	558	403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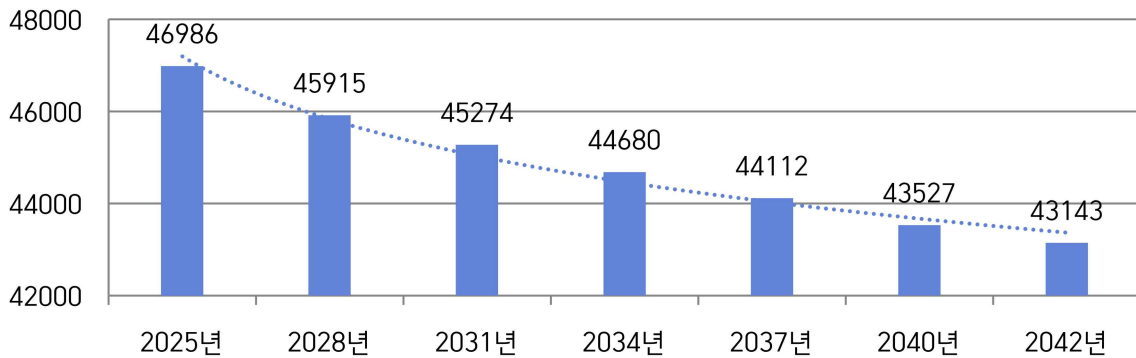
3) 작물 생산 현황

- 식량작물로는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면적이나 생산량에서 미곡이 압도적 비중
 - 식량작물 면적의 90%가 미곡으로, 24,550톤 생산
- 원예작물은 토마토, 호박, 시설고추, 딸기, 파프리카, 시금치, 참취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 그중 참다래, 단감, 시금치, 부추, 시설고추 등의 재배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

4) 고성군 장래 인구추계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성군의 2042년 추계인구는 43,143명으로 2024년 48,005명 대비 10.12% 감소 예측
 - 다른 군부 지자체 대비, 인구 감소 및 평균 연령 상향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는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림 3. 고성군의 장래 추계인구 추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제3장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개요

1.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제도 시행 이력

-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정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위주로 전개
 - 1990년대 초 산업연수생제도로부터 시작해 2004년 고용허가제로 변화 발전
- 1990년대 중반부터 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난으로 농축산업 부문에 산업연수생의 유입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무시
 - 당시에는 외국근로자에 의존할 경우, 농업 경쟁력이 더 저하되고 내국인 농업인력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 시작
 -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외국의 비전문 노동력을 국가의 통제하에 활용하는 제도 도입
 - 농가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전제
 - ※ 4년 10개월(1회 동일 사업장 근무를 조건으로 재입국 근무 가능) 동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주로 연중 고용인력이 필요한 축산·시설원에 분야에서 활용
- 직접고용 계절근로자제도는 2015년 충북 괴산군에서 시범 운영 시작
 - 괴산군이 19명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참가 지방자치단체와

배정 인원이 증가

- 2017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되면서 입국 인원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40,647명의 계절근로자 입국

- 그러나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거의 올스톱

※ 2020년 농업 부문 계절근로자 규모는 당초 5,000명 이상 배정되어 4,000명 이상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입국은 0명으로 사실상 중단

○ 2022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부터 본사업으로 시행

- 기존 제도와 달리 소규모 영세농가에서도 합법적으로 이주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초단기간 노동력 활용과 특정기간 필요 인력을 집중 공급할 수 있게 되어 농가 부담 크게 감소

- 시범사업을 진행할 당시 계획은 2027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2024년으로 확대 시기를 앞당길 만큼 좋은 반응 형성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는 2022년 190명으로 시작하였지만, 2023년에는 819명(8월 기준)으로 확대

2. 고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추진 현황

〈그림 4. 고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추진 흐름〉



- 2023년 6월 고성군은 경상남도청에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2023년 8월 라오스에서 선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18명을 초청하여 고성군 농업분야에서 근로를 시작하였는데, 고성군은 입국 설명회를 개최하고, 근로 조건 및 생활 안내를 제공
 -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42명으로 증가
- 고성군의회,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2024년 5월 10일 제정
 -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과 고용 촉진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인력 지원 방안을 규정
-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 2024년 9월 9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농협이 운영주체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제안
 - 이후 고성군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고성군의회를 중심으로 전개
- ※ 고성군의회 내 정책연구회 구성, 정책 연구용역 추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선진지 벤치마킹,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방안 강구 등 정책 구체화 과정 실행

제4장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문제점

1.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문제점

- 개별 농가가 고용주이자 운영주체가 되는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방편이지만, 농가의 과중한 부담 및 현실적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
 -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적합 숙소 제공(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 불가) ▲최저임금 지급 ▲산재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최소 근무일수 보장(주 35시간 이상) 등 필수 준수 요건의 문제

1 근무일수의 문제

-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시간을 주 35시간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은 파종기와 수확기에 집중되는 단기노동이 필요한 농가에게 해소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
 - 경지면적 기준 영세농·소농의 비율이 81.6%에 이르는 고성군의 현실에서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와 장기 계약을 맺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적합한 농가는 1년 내내 고용이 가능한 시설원예·축산 농가이거나 중농(1ha~2ha) 혹은 대농(2ha 이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국한

2 숙소 제공의 문제

- 정부, 2021년부터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활용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을 금지하겠다는 원칙 표명

- 노지작물 위주의 중소농이 번듯하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 형편상 불가능하고, 지자체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년에 5~8개월 사용할 목적으로 숙소를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

- 고용노동부(2021년), ‘농어업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발표
 - 첫째, 2021년 1월 1일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원칙적으로 불허
 - 둘째, 고용주가 기숙사 상태를 시각자료(사진, 영상)로 고용허가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에 주거시설로 신고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
 - 셋째, 빈집 등 유휴시설 활용해 외국인여성 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우수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근로자 배정 시 가점을 적용
 - 넷째, 사업주의 노동·인권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는 사업주에 대한 노동, 인권 교육 의무화를 추진
- 농림부(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작
 -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되는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 및 설치 비용(개소당 1,500만원) 지원

3 최소 임금 지급의 문제

- 정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켜야 할 최소 기준으로 ‘체류 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전환
 - 전체적으로는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임금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운영주체에게도 경제적 혜택을 제공
 - 문제의 핵심은 법이나 정책의 기준이 아니라, 임금지불의 주체가 개별

농가라는 점이며, 이로 인해 임금 체불이나 외국인이 항변할 수 없는 왜곡된 근로형태가 진행될 수도 있는 현실

4 인권 및 안전의 문제

-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관리하는 관계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반인권적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도 빈번
 - 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행정적 업무를 대행하거나 문화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숙소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의 주체가 개별 농가이기 때문에 허점 발생

5 인원 선발 및 브로커 개입의 문제

-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지자체가 나서서 상대국가 지자체와 MOU를 맺어 진행하지만, 지자체가 직접 현지 선발하거나 입국 이후 집중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브로커 개입 피해 지속
 - 농가가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적정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브로커의 개입을 막지 못한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농가의 간접 피해도 지속

6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문제

- 정책 시행 초기 근로환경 및 관리체계 상의 문제로 무단이탈 사례가 빈번히 보고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농가형)가 본격 실시된 2017년 이후 2021년에 이탈률이 17.1%에 이를 정도로 폭증하는 양상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시범실시된 2022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9.6%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 노정

- 이후 정책이 점차 안정되고, 엄격한 출입국 관리, 숙소 안전 관리, 임금 지불 및 인권 상황 개선으로 이탈률 급격히 감소 추세
 -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2024년 본사업으로 확대 실시하기 전인 2023년의 이탈률은 1.6%로 급격히 감소
 - 결혼이민자 인척 중심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이나 우수 외국인의 재선발 정책, 근로자 복지 증진 등으로 무단 이탈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 개선
 - 지자체의 관리 방식과 환경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0%에 도달한 사례 속출

〈표 6.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구분	참여인원	이탈인원	이탈률(%)
2017	1,085	18	1.7
2018	2,824	100	3.5
2019	3,497	57	1.6
2020	223	0	0
2021	1,850	316	17.1
2022	12,027	1,151	9.6
2023	31,350	494	1.6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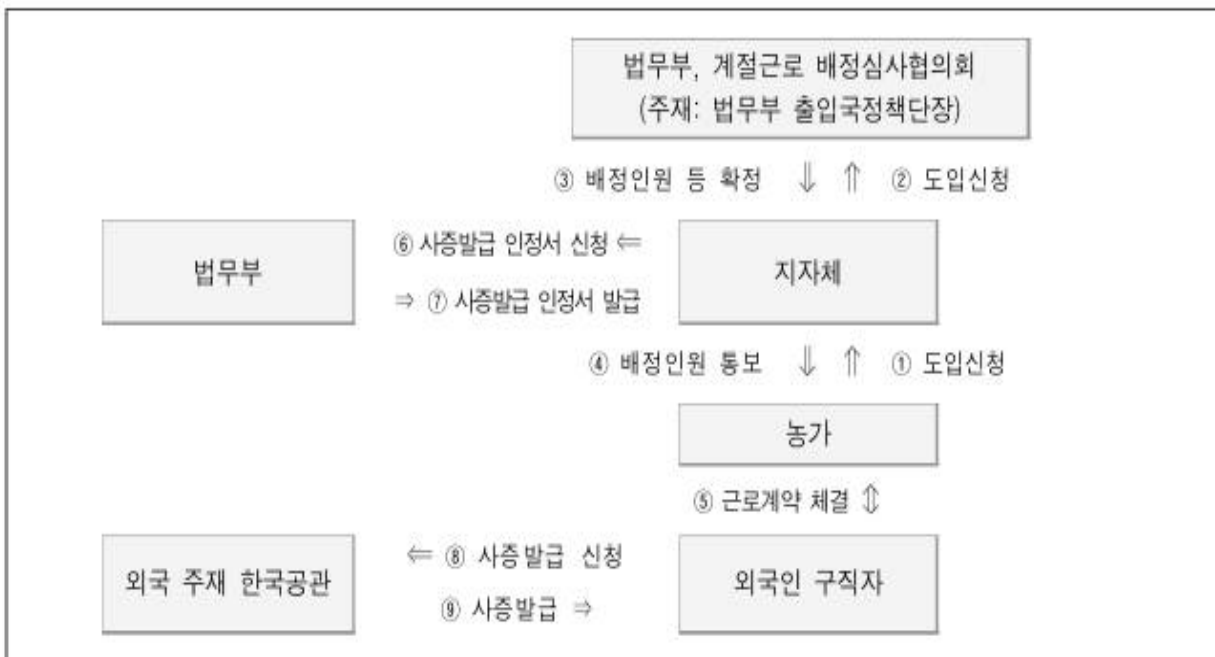
2.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행 절차

-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매년 기초지자체가 관할 농민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은 후 해당 신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할 지역의 신청자 수를 확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제출
 - 법무부는 취합한 수요를 5개 기관으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 제출하고, 배정심사협의회는 이를 심사하여 기초지자체별 배정 인력을 확정
 - 허용 인원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5명에서 9명까지 허용하며 지자체에서 정한 인센티브 기준과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 미만인

경우, 최대 5명까지 추가 가능

- 배정 인력이 확정된 후, 기초지자체는 외국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인력을 송출받거나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계절근로자 도입 인력 선별
-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입국, 근무, 출국에 관한 부분을 책임 운영하되, 담당 공무원 적정 배치, 통역요원 확보, 교육 및 농가 배정 점수제 등 계획이 부실할 경우 배정에서 제외 혹은 삭감 가능

〈그림 5. 농가형 정책 시행 절차〉



* 자료 : 〈감사보고서 :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2024.6)〉

3. 고성군 읍면별 외국인 근로자 수요[대표 농지 기준]

〈그림 6. 고성군 읍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



- 고성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수요 517명 중 영오면(223명 43.1%), 고성읍(92명 17.8%), 구만면(57명 11.0%), 개천면(40명, 7.7%) 등 4개 읍면의 수요가 거의 80% 차지
- 근로자수 기준 재배 상위 3개 작물은 딸기(31% 159명), 부추(25% 130명), 파프리카(15% 77명)로 구성

제5장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개요¹⁾

1 법무부 관련 지침

1.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의3, 제29조 등

2. 참여 대상

1) 대한민국 기초지자체와 해외 기초지자체(지방정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

- (기본) 해외 지방정부의 주민(사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 (경력) 본국에서 농어업 종사 이력 1년 이상
- (연령) 25세 이상 50세 이하

[예외] 19세 이상 ~ 25세 미만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입증서류 제출)

- ㉠ 우리 정부(지자체)의 국제농업협력(ODA) 프로그램 참여자
- ㉡ KOICA 등 준정부기관의 농업교육 참여자

2)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방식의 경우

1)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서 발췌 인용

○ (기본) 본국 거주 가족(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은 '26년부터 추천 대상에서 제외

※ 결혼이민자 1인당 허용 인원은 최대 10명 이하(연간 누적 기준)

○ (연령) 19세 이상 55세 이하

○ (결혼이민자의 범위)

㉠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F-6-1)

㉡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국적 취득자)

3) 유학생의 부모 초청 방식의 경우

○ (기본)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

○ (연령) 신청일(지자체로의 계절근로 활동 신청) 기준 만 55세 이하

○ (유학생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소속 대학)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 (체류 등) 유학(D-2) 자격으로 1년 이상 체류(입국일 기준)한 자로, 잔여 유학기간이 2개 학기 이상인 경우

㉢ (기타)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 위반사실이 없는 자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36조 1회 위반자는 예외적으로 허용

4) 선발 제외 대상

○ 결핵, 매독,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현

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사람

5) 공통 사항

- (근로자 선발요건) 상기 요건의 기준 범위 내에서 국내 기초지자체는 요건을 강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완화할 수는 없음)
 - 예시) 만 25세 이상~ 40세, 농어업 종사 이력 2년 이상 등
- (입국·체류기간) 당해연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최초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5개월 이내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근로계약 연장 시 최대 8개월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

3. 유치 신청과 인원 배정

1)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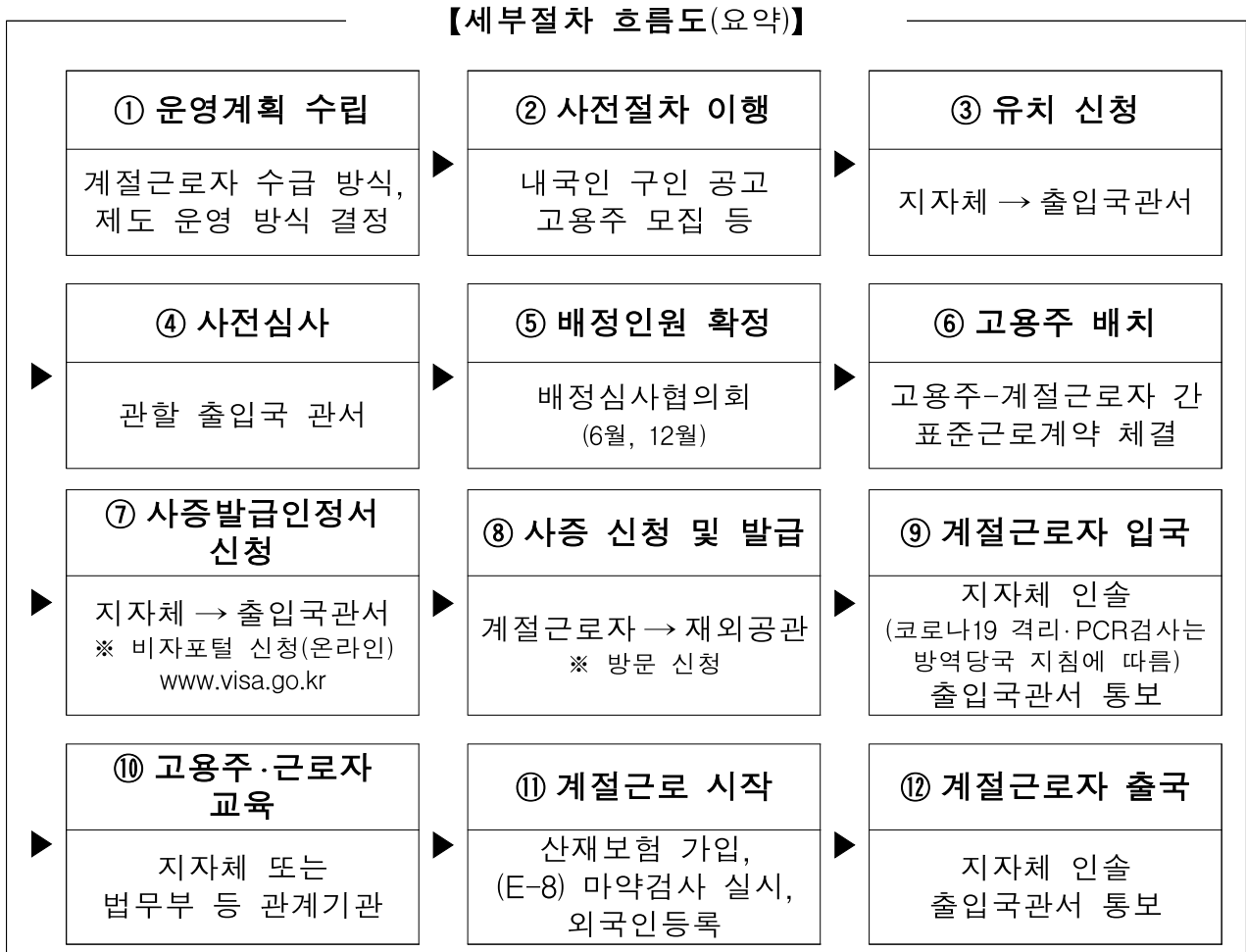
가. 신청자 :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 ※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나. 시기 : (상반기) 매년 10~11월중, (하반기) 매년 4~5월중

다. 방법 : 농가 수요조사 후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청(공문 시행)

제 목 : ○○시 000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전심사 신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1부.
2. 기초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1부.
3.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1부.
4.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서 1부. 끝.

〈그림 7.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세부절차 흐름도〉



라. 제출서류

1) 필수

○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 지자체 관할지역 고용주의 신청을 받아 작성
- 신청 고용주의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첨부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수산정보통합시스템 출력물,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

○ 국내 지자체의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 및 우수 사업장 목록

-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서
- 2) 추가서류(해당 기초지자체)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 업무협약(MOU) 체결 결과서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계획서(농식품부 선정 공문 첨부)
- 감염병 관련 격리 및 방역 계획서(필요시)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가. 배정심사협의회

- 1) (개최) 연 2회(다음연도 상반기 배정 12월, 당해연도 하반기 배정 6월)
- 2) (주재)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 3) (구성) 법무부(체류관리과장, 이민통합과장),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정책과장),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장),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장)
- 4) (안건)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최종 확정, 부처별 제도개선 등 현안 논의

나. 배정 인원 결정 기준

-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의 필요성
-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수급 방식의 적절성
-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능력(전년도 이탈률, 운영실태)

- 4) 인권 보호 계획,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 대책 등의 실효성
- 5) 기타 감염병 대응, 배정 규모 조정 필요 사유 등에 대한 심사

5. 공공형 사업 운영방식

1) 대상자(운영주체)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 사업수행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2) 운영형태 및 비용 등

-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
- 기초지자체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요청 농가에 노동력 제공
- 운영주체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공동숙소 제공, 당해연도 사업 개시 전 농가 이용료 책정 후 사전 공개

※ 운영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농가 이용료로 충당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지원 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사전에 참여농가 모집, 농가 공급 일정 등을 수립, 작업반을 편성하여 농작업 현장 이동, 농작업 교육 등 지원
- 사업수행기관은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해 인신매매식별지표 전수조사(채용 후 2개월 이내) 후 출입국관서에 조사표 및 조사결과 제출(필수)

3) 운영조건(준수사항)

○ (근로계약) 사업수행기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및 종사업무, 임금 결정·계산·지급방법, 숙식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체결(표준근로계약서 활용)

- 근로장소는 농가의 작업장 및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장

※ 해당 농협 내 APC, 육묘장의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관리 업무로 한정, 근로자별로 총 근로시간의 30% 범위 내에서 허용(근무대장 기록)

○ (보험) 산재보험·건강보험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제외 사유가 아닌 경우 이외에는 의무가입(상호주의)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미가입 가능

○ (임금) 연도별로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지급

- 임금은 월 실제 총 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산정

※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

- 연장근로 :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권고)

-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는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8시간 초과하는 경우 시간급의 2배 가산 지급 (권고)

- 매 임금 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 (숙식 제공) 동 프로그램에 따른 숙소 요건에 적합한 시설에 공동

숙식 제공(1실당 최대 8인 이하)

- 숙식비는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청구 또는 월 임금에서 차감 가능
- 근로자와 사전 합의 후 월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서명 필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관
- 숙소 1실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숙식비를 차등하여 부담 금액으로 하는 등 적정 금액으로 숙식비 징수할 것

※ (예시) 1실(전용 6㎡) 1인 거주 = 40만 원

1실(전용 10㎡) 2인 거주 = 50만 원 ÷ 2인 = 25만 원 등

▶ 다인실의 경우 1인당 사용 면적을 고려하여 1인당 부담액이 낮아지도록 할 것

〈표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식비 징수 상한액 기준〉

구분	숙박시설, 기숙시설, 수련시설, 휴양림, 체험휴양마을, 마을회관 등 (또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숙식 모두 제공 시	월 통상임금의 20%
숙소만 제공 시	월 통상임금의 15%

※ 통상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적용(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을 공제)

- (이용료) 사업수행기관은 지자체·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근로자의 임금, 작업장 이동, 보험 가입 등 계절근로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료 책정
- (인력제공·구성) 사업수행기관은 사전 모집·신청을 통해 참여 농가에 인력 제공
 - 농가 신청에 따른 작업 일정 수립 및 작업반 구성
 - 사업수행기관은 계절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농가는 사업수행기

관을 통해 필요한 작업지시 등을 요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준용

4) 사업대상자 선정

- (주체) 농식품부(1차) →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최종)
- (일정) 매년 농식품부에서 지자체 공고 및 신청접수(10월), 심사 자료 작성 및 실태조사(11월), 배정심사협의회 개최(12월)
- (기준) 계절근로자 운영실적, 운영 주체의 적정성, 참여 농가 모집, 공동숙소 구비 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6.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1) 신청 시기

-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정 이후 연중 신청

※ 필요시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소요기간, 계절근로자 본국에서의 비자발급 소요기간, 출국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결정

- 2) 신청 방법 : 비자 포털(www.visa.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3) 사증 종류 * '25년부터 단기취업계절근로(C-4) 비자 발급 중단

〈표 8. 사증의 종류와 관련 사항〉

사증(VISA)		분야	피초청자 등	국내 체류기간	사증 유효기간/종류
단기 취업 계절 근로	C-4-1	농업	업무협약(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90일	3개월/ 단수
	C-4-2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친척 / 유학생의 부모		
	C-4-3	어업	업무협약(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C-4-4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친척 / 유학생의 부모		
계절 근로	E-8-1	농업	업무협약(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5개월 ※ 최대 8 개월 이내 에서 연장 가능	
	E-8-2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E-8-3	어업	업무협약(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E-8-4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E-8-5	농업	기타(G-1) 체류자격으로 활동 후 재입국		
	E-8-6	어업	기타(G-1) 체류자격으로 활동 후 재입국		
	E-8-7	농업	유학생의 부모		
	E-8-8	어업	유학생의 부모		
	E-8-9 9	기타	언어소통 도우미 등 기타 보조인력		

※ E-8 사증은 연간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발급 횟수 제한 없음,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 대상

7. 근로조건·인권 보호 관련 고용주 준수사항

가.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 계절근로자의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주거환경 제공
- 계절근로자가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미적용(면제)

1)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

※ 외형은 컨테이너지만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하여 필수 시설·물품 등을 구비한 조립식 구조로써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숙소로 사용 가능

2) 필수 시설·물품 구비

-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 취사도구, 침구류
- 소화기, 화재감지기

3)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아래의 상한을 준수하고, 숙소 시설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준의 금액을 징수하되, 다인실의 경우 공동사용을 고려하여 1인당 적정 금액 징수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금액을 명시한 경우 징수하되, 초과 징수 금지)

〈표 9. 숙식비 징수 상한액 기준〉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주거시설	그 밖의 주거시설 (조립식 숙소, 개조 숙소)
숙식 모두 제공 시	월 통상임금*의 20%	월 통상임금의 13%
숙소만 제공 시	월 통상임금의 15%	월 통상임금의 8%

※ 통상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적용(근로계약서상 기재한 금액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을 공제)

※ 해조류 양식업(해상) 숙식비(숙소만 제공 시 포함) 징수 상한액 최대 10% 초과 금지
공공형 계절근로: 숙식 모두 제공 시 최대 20%, 숙소만 제공 시 최대 15% 초과 금지

-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 후, 계절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숙식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사전 공제 후 임금 지급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숙식비 공제금액(부담액) 등을 명시하여 근로

자에게 설명하고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근로계약서상 숙식 정보와 공제금액이 달라 발생하는 분쟁 대비)

※ 고용주는 원본, 지자체는 사본 보관

나. 산재보험 의무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 대체 가입 가능

1)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기존에 산재보험 가입된 고용주는 보험 실효 여부 확인 후 다음달 15일까지 계절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계절근로자를 최초 고용할 경우 근로개시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① 사업장 산재보험 신청, ② 계절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병행 처리

※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고용하는 경우 포함

2) 주요 내용

- ① 최초 가입은 가입 주체인 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가입 신청
※ 방문·팩스·온라인(<https://total.kcomwel.or.kr>)
- ②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보험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신고 가능

○ 보험 관계 성립

-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자는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상 가능
- 보험 관계는 고용한 마지막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제출서류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근로자명부

○ 근로자의 고용 신고

- 입·퇴사 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한 날 또는 고용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일용근로자 : 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 개시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보험 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 임금 지급

1) 연도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 지급

- 월 실제 총 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2) 지자체는 매년 최저임금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급, 일급, 월급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3) 계약기간이 연도를 달리하면 새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 최저임금 변동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4)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계절근로자 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하여야 함. 다만, 통장 개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을 허용하되,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 수령증’ 및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근로자와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공제 후 임금 지급

※ 임금 중 일부를 제3자(대리인, 중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 **지자체 담당자는 계절근로자 본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제3자 임금갈취 여부 포함) 정기적인 면담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5)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 근무하는 계절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은 가능

※ 가공업체 등은 대부분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5인 이상 사업장 일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을 가산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가공업체 등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름

라. 근로장소 및 근로 내용

1)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어가 및 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로 가능**

※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 (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

2) 어업의 경우 원시가공에 한하여 근로 가능(허용 해상작업 외 금지)

3) 지게차 운전 행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하·유통판매 등 작업 금지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등록증(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출력물)에 명시된 사업장(농지), 선별장(가공공장) 등만 근무 가능
- 법인에서 농작물의 재배,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1차 가공 등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 가능

- 4) 공공형 운영 농협에서 기상여건 등에 따른 유희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사업장(APC, 육묘장)에서 작물재배, 선별·세척·포장, 1차 가공 등의 작업 허용(근로자별로 체류기간 중 총 근로시간의 30% 이하)

※ 근로자별 근무장소, 근로시간 등 작성·관리

마.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 기준

- 1) (근로시간) 1일 7~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가능

※ 1일 최대 10시간(휴게시간 제외) 이상 근로 금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 연장·휴일 근로 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되,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여부는 권고사항

- 야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근로 시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권고, 5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

- 2)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3) (휴일)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휴무를 제공하거나 8시간 이내 근로 시 100분의 50, 8시간 이상 근로 시 2배 이상을 가산(권고)하는 등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바. 최소 임금 보장

-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 단,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사. 인권 보호

- 1)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현금카드)을 고용주 또는 제3자가 보관할 수 없음(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및 제94조제19호에 따라 처벌 대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금지

2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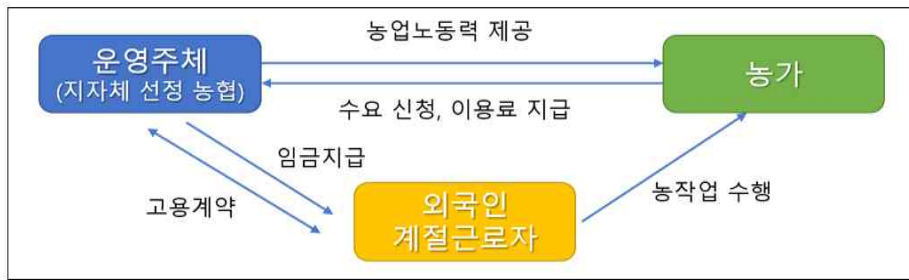
1. 사업대상자(운영주체)

-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 사업대상자: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2. 운영방식

-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법무부)에 따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MOU체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등)
 -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협)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농가에 농업노동력 제공(「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 운영주체는 공동숙식으로 계절근로자의 체류를 관리하며, 내국인 작업 반장을 포함한 작업반을 편성하여 농작업 현장 이동 및 노동력 제공
 - 참여 농가는 노동력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운영주체에게 지급
- ※ 지자체는 운영주체, 참여 농가 등과 협의하여 농가 이용료를 책정하되, 민간 노동시장 평균 임금과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책정 권장

〈그림 8. 공공형 운영방식 개념도〉



3. 운영조건 및 내용

○ (근로계약) 운영주체가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취업 장소 및 종사업무,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숙식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 체결(표준근로계약서 활용)

○ (근로범위) 계절근로자는 토지의 경작·개간, 농작물의 식재·재배 및 수확, 수확 농작물의 선별·세척·절단·포장 등 단순 처리 및 가공, 수확 농작물의 상하차 작업 등 농작물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에서만 근로 가능

- (지원 우선순위) 관내 농가, 과수·채소 등 일시적 인력수요가 급증한 타 시군 소재 농가

※ 외국인근로자 성폭력으로 형사처벌 농가는 발생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공공형 계절근로 참여 배제

○ (근로시간) 1일 7~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가능

○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휴일)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 (임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당해연도 최저임금('25년 시급 10,030원) 이상으로 계약·지급하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 임금은 최저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하되,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지급 보장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매 임금 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 (보험) 산재·건강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라 체류자격, 송출국에 따라 다르게 적용
 - ※ E-8은 국가별로 다름
- (공동숙식)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숙소 요건에 적합한 시설을 공동숙소로 제공하고, 통역, 관리인력 등을 배치하여 체류 지원
 - 숙식비는 계절근로자에게 청구 또는 급여에서 차감 가능
 - 근로자와 사전 합의 후 월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숙식비 공제 동의서' 작성(서명 필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관
 - 숙소 1실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숙식비를 차등하여 분담 금액으로 하는 등 적정 금액으로 숙식비를 징수할 것

※ (예시) 1실(전용 6㎡) 1인 거주 = 40만 원, 1실(전용 10㎡) 2인 거주 =50만 원 ÷ 2인 = 25만 원 등 다인실의 경우 1인당 사용 면적을 고려하여 1인당 부담액이 낮아지도록 할 것

〈표 10. 숙박비 징수 상한액 기준〉

구분	숙박시설, 기숙시설, 수련시설, 휴양림, 체험휴양마을 마을회관 등 (또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숙식 모두 제공 시	월 임금의 20%
숙소만 제공 시	월 임금의 15%

- (이용료) 지자체는 운영주체, 참여 농가 등과 협의하여 근로자 운송, 보험료, 인건비, 계절근로자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가 이용료 책정
- (노동력 제공) 운영주체는 내국인 또는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으로 작업반장을 선발하고 작업반장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작업반을 구성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

※ 작업반은 계절근로자 5~10명당 작업반장 1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

- 작업반장은 농작업 현장에서 계절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농가에서는 작업반장을 통해 필요한 작업 등 요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준용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변경시 변경사항을 동일하게 적용

4. 운영주체 준수사항

- (교육이수) 운영주체 대표, 센터장 및 전임 담당직원은 전문지원기관(농협중앙회)이 실시하는 노무관리, 인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집합교육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4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집합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외국인근로자 성폭력으로 형사처벌 운영주체는 발생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공공형 계절근로 참여 배제

5. 기타 유의사항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로 복수의 농협을 지정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공공형 계절근로)

○ (공공형 계절근로 예산) '25년 9,000백만원(국비 4,500, 지방비 4,500)

- (지원기준) 90개소×90~140백만원×국비 5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추가 수립 가능

제6장 농촌인력중개센터²⁾

1. 사업 개요

□ 목적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사업 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촌형)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사업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며,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 (도시형) 농협중앙회(농촌지원부)
- (공공형 계절근로) 지자체가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 (센터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 경상경비

2)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서 전제

- (인력운영비) 교육비, 임차비, 교통·숙박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보험료 등

•(구인자) 교육비, 취약계층 우선 중개 추진

※ ①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② 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 농가 등

•(구직자) 교통·운송비, 숙박비, 식비, 교육비, 보험료 등

※ 농작업 참여자의 인건비는 농가에서 지급

○ 지원기준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 (농촌형) 189개소×70~90백만원×50%(국비 50%, 지방비 50%)

※ (시도형) 9개소, (시군형) 180개소

- (도시형) 1개소×130백만원×70%(국비 70%, 자부담 30%)

- (공공형 계절근로) 90개소×100백만원×50%(국비 50%, 지방비 50%)

○ '25년 예산: 24,250백만원(국비 12,151, 지방비 12,060, 자부담 39)

□ 사업 신청

○ (농식품부) 다음 연도 사업 신청·접수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전년도 10~11월)

○ (시·도) 시·군이 제출한 사업 신청자 기초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우선 순위와 사업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10~11월)

○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10~11월)

□ 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전년도 10~11월)
- 선정 결과를 시·도, 시·군에 통보(전년도 11~12월)

□ 담당 기관

담당기관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지방자치단체(시·군)	사업담당과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2. 주요 내용

- 본 사업은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재정 사업관리기본규정 및 e나라도움운영지침에 따름

□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농협중앙회
- 사업대상자
 - (농촌형)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농촌형 인력증개센터 사업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며,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 (도시형) 농협중앙회(농촌지원부)
 - (공공형 계절근로) 지자체가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등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시·도, 시·군)의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복수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

- 선정우선순위: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미설치된 시·군에서 신규 신청하는 경우, 기존 운영센터에서 연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등 우선 선정 고려

※ 단, 최근 2개년 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대상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운영비, 인력운영비 등 경상 경비 지원

□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 기준)

- 사업기간: '25.1.1.~ '25.12.31.
- 사업규모: '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 280개소 운영(농촌형 189, 도시형 1, 공공형 계절근로 90)
- 총사업비: 24,250백만원(국비 12,151백만원, 지방비 12,060백만원, 자부담 39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도시형인력중개센터는 국비 70%, 자부담 30%)

□ 사업 추진체계 및 내용

○ (추진체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 알선·중개

- (농촌형) 시·도, 시·군에 농촌형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

※ (시도형) 관내 인력수급 모니터링, 도시구직자 모집·구성, 시·군 간 인력 조정, 내·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 등
 (시군형) 관내 인력풀 모집·구성 및 인력 중개·알선, 인력수급 상황 모니터링, 내·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등

〈표 11.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업무 범위〉

〈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업무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고용인력 및 사용자에게 대한 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 농업 고용인력 및 사용자에게 대한 상담 및 무료직업 소개·지도 - 농업 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 및 지역간 연계 협력 - 관내 인력풀 모집·구성 및 시·군간 인력 조정 등 지원 - 관내 인력수급 상황 모니터링(인력수급 현황, 농작업 동향, 인건비 동향 등) ■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지자체, 농협중앙회, 농업인단체, 인력지원 관련 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사무소, 다문화센터, 대학교,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자원봉사 단체 등 ■ 관내 내·외국인 농업 고용인력 활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인 농업 고용인력에 대한 농업기술·안전교육, 한국어 교육, 통역에 관한 사항 - 내·외국인 농업 고용인력 및 사용자에게 대한 고용·노무관리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시도형 인력중개센터는 도시구직자 모집을 위한 홍보 업무(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플랜카드 게시 등), 내·외국인 근로자 농업교육·노무관리·인권·안전 교육, 상담 등 집중 추진

- (도시형) 도시 유희인력을 모집·선발하여 농작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자체 또는 농촌형 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하여 필요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

※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는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공공형 계절근로)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
-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추진내용) 구인-구직자간 중개 업무, 구인·구직 상담, 일정 관리, 농작업 교육, 인력수급 모니터링, 내·외국인 근로자 활용 지원 등

① 센터 운영

- (중개) 구인-구직자간 중개업무, 구인-구직 상담, 일정 관리 등
 - (홍보) 관내·외 홍보, 유관기관 연계 구축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으로 구인자·구직자 모집 및 인력풀 구축
 - (모니터링) 관내 인력수급 현황, 인건비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주요·품목별 표본농가 등을 선정하여 모니터링 실시
- ※ 관내 주요 품목·규모별 농가, 이장, 농업인 단체, 품목 단체 등 관련 협회·단체 임원 등
- (도농인력중개플랫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기관은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구인-구직 홍보 및 등록, 데이터 관리 등 추진
 -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한 구인 공고 게시(최소 월 2회 원칙, 필요시 수시)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생산되는 각종 통계자료, 인력수급 현황 등 모

니터링 내용에 대해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입력 및 관리

※ 중개실적, 구인-구직자 정보, 인력풀 및 영농작업반 현황 등

② 인력 운영

- (운영대상) 농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협동조합, 농협 등) 등 농작업 참여 희망자, 국내에 체류하며 농업분야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외국인

- (운영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분야

※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칭

- (우선순위) 인력중개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지원

• (1)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2) 고령농, 여성 단독, 소규모 등 영세 농가, (3) 노지채소, 과수 등 인력 수요가 높은 농가

※ 단, 태풍·우박·폭설 등 자연재해, 시급한 인력수요 발생시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영농작업반) 효율적인 인력중개를 위해 모집된 인력풀을 활용하여 영농작업 반장 선정 및 영농작업반을 구성하여 인력지원

※ 영농작업반은 영농작업반장 포함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영농작업반장은 인솔, 일정 관리, 농작업 교육 등 진행

- (농기계작업반) 발작물 농기계 소유자 또는 임대를 통해 발작물 농작업 대행이 가능하도록 농기계작업반 운영 및 지원 가능

※ 농기계작업반을 모집 등록하고, 농가의 농작업 대행 수요에 따라 중계

- (교육) 내·외국인 농업 고용인력 및 농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인권보호, 농업기술 및 안전교육, 한국어 교육 등 관련 교육 지원

※ 농업관련 전문가, 센터 담당자, 영농작업반장, 우수 농가 등을 활용 관련 교육 진행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모집 강화, 계절근로 참여 확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가 수요 접수, 홍보, DB 구축 등 지자체 행정지원 추진

〈표 12.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프로세스〉

	등록		활용	
계절근로를 희망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	↔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 DB 구축)	↔	지자체 상시 인력 도입 국내체류 계절근로자 홍보·채용 활성화
국내체류 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농촌형 인력중개센터)

○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예산) '25년 15,120백만원(국비 7,560, 지방비 7,560)

- (지원기준) 189개소×80백만원(70~90백만원 차등 지급)×국비 5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추가 수립 가능

☛ 사업비 편성·집행 기준

<사업비 편성>

○ (용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교육비, 교통·운송비, 숙박비, 보험료 등 경상적 경비

○ (편성) 국고보조 사업비는 센터운영비(40%), 인력운영비(60%)로 항목을 편성하여 신청하고, 반드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 시도형 인력중개센터는 구직자 모집 강화 등을 위해 센터운영비-인력운영비간 예산 편성비율 조정 가능

○ (변경사항) 불가피하게 사업비 변경시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

- 항목간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 혹은 광역지자체(시·도)의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

※ (센터운영비→인력운영비)농식품부 사전협의 후 광역지자체(시·도)에서 승인시 조정 가능
(인력운영비 → 센터운영비) 농식품부에서 사전 승인 후 조정 가능

- 항목 내 세부 항목 간 예산 변경은 기초지자체(시·군·구)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

- 농촌형 인력중개센터간 및 농촌형 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 센터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광역지자체(시·도)의 검토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 후 조정 가능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

- 토지 건물의 구입비 등 자본재 지출 불가

〈표 13.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비 내역〉

항목	세부항목	사용 용도
센터 운영비 (40%)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연가보상비, 초과 수당, 기타 수당 등)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품, 인쇄비 및 유인비, 공공요금 등 ■ 센터 등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각종 수수료 등 유지·보수비 ■ 각종 회의비, 간담회비 등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 간판 등 안내 물품, 사업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센터 전담인력 등의 출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별표 6]에 의거하여 집행 ■ 기타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용도 범위내 비용
인력 운영비 (60%)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인 농업 고용인력 및 농가 교육을 위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준수, 인권보호, 농작업 교육, 안전 교육, 한국어 교육, 통역지원 등 ■ 고용주(농가 등)가 도시·신규 구직자 채용시 교육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 1인 기준 20천원 지급(인당 최대 3일 지급가능, 일 최대 지급 상한 100천원) * 각 센터별 농작업 참여 기록이 없는 도시·신규 구직자가 농작업에 참여한 경우 지급
	임차비 및 차량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운영 등에 필요한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인력운영 등에 필요한 공용차량 유류비 등
	농작업 참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 이동거리 30km 미만은 1일 5천원, 이동거리 30km 이상은 1일 10천원 지급 * 구인자(농가)가 근로자를 직접 수송하는 경우 구인자(농가)에게 교통비 지급 가능(1일 지급 상한 10천원) - (기타) 자원봉사자 수송을 위한 전세버스 이용료 등 지원 가능 ■ 참여자에 대한 숙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비) 1박당 20천원 지급 * 단, 관외 구직자가 3일 이상 연속하여 농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숙박비 지급 * 작업개시일, 종료일을 제외하고 숙박비-교통비 중복 지급 불가 - (기타) 지자체에서 관외 구직자를 위한 마을회관, 공동시설 등 숙박시설 지정·활용에 따른 비용 지출 가능 ■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비 등) 1일 5천원 지급
	영농작업반장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작업반장 활동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작업반장의 활동일 기준으로 1일 10천원 지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참여자 상해보험료 지원 ■ 농작업 도구, 안전 장비 등 구입 비용 ■ 농작업 모니터링 조사와 관련된 비용 ■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시 필요한 비용 지급 가능 ■ 기타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용도 범위내 비용

- 중요자산(내구성물품)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입비용은 지원 가능

※ 중요자산(내구성물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50만원 이상)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시설·장비 임차 비용의 지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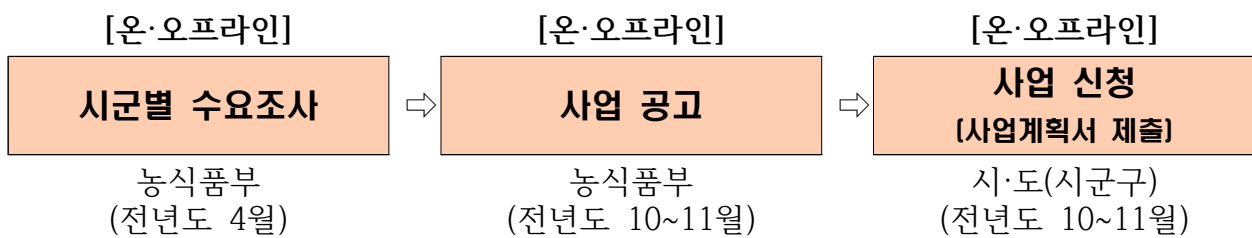
-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시설·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범위내에서만 임차비를 지급함

○ 간담회 비용 사용은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그림 9. 농촌인력중개센터 관련 사업 신청 및 절차 흐름도〉



□ 수요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

에 통보(전년도 4~5월)

<그림 10. 농촌인력증개센터 관련 추진 내용 및 일정>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사업 수요조사 (농식품부)	전년도 4~5월
↓ ② 사업 시행지침 안내 및 사업 공모·공고 (농식품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전년도 10~11월
↓ ③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전년도 10~11월
↓ ④ 기초지자체 사업신청서 및 도별 1차 평가 결과 제출 (광역단체 → 농식품부)	전년도 10~11월
↓ ⑤ 사업 심사 및 선정 (농식품부 사업선정위원회)	전년도 10~11월
↓ ⑥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농식품부 → 광역단체 → 기초지자체)	전년도 11~12월
↓ ⑦ 사업 예산안 확정 통보 (농식품부 → 광역단체 → 기초지자체)	전년도 11~12월
↓ ⑧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사업수행기관 ↔ 지자체 ↔ 농식품부)	당해연도 1~2월
↓ ⑨ 사업 실시 (지자체, 사업수행기관)	당해연도 1월~
↓ ⑩ 지도·점검 (농식품부, 지자체, 농정원)	당해연도 1월~
↓ ⑪ 사업 평가 (농식품부, 지자체, 농정원)	당해연도 11~12월
↓ ⑫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 → 농식품부)	사업종료후 3개월이내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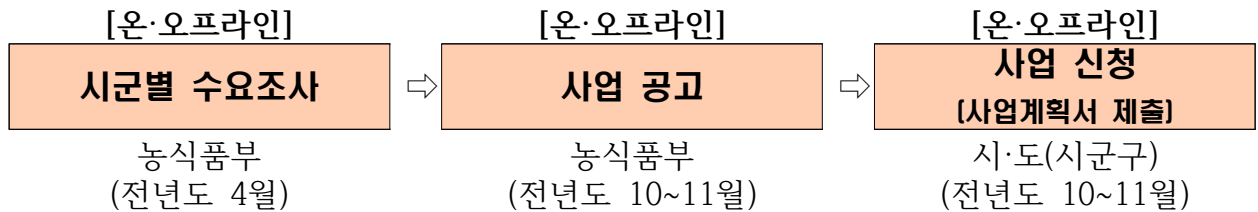
- 시·도는 시·군에 수요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시·군의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전년도 4~5월)

시·군

- 시·군은 관내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기관·단체, 기운영 농촌인력 중개센터 등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4~5월)

2) 사업자 선정

〈그림 11. 사업자 선정 절차〉



□ 사업 신청 및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통보(전년도 10~11월)

시·도

- 시·도는 시·군에 신청·접수 계획을 통보
- 시·도는 시·군이 제출한 신청자료를 기초로 지자체 추천 기준에 의거하여 1차 평가 실시 후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전년도 10~11월)

시·군

- 시·군은 관내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기관·단체에게 신청·접수 계획을 통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10~11월)

□ 사업자 선정 및 예산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별도의 사업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전년도 10~11월)

〈표 14. 농업인력중개센터 관련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공통사항	자격요건
① 심의대상 관련 이해관계가 없는 자 ② 해당분야 전문성 또는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① 대학 조교수(전문대 부교수) 이상 ② 5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③ 컨설턴트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④ 박사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⑤ 석사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⑥ 학사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 보유자 ⑦ 단체·협회의 사무총장(중앙단위) 등

※ 사업선정위원회는 내·외부위원 5인 이상(외부위원 1/2 이상)으로 구성

- 선정위원회는 사업 내용의 구체성, 인력 모집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 준비 및 경험, 시·도에서 제출한 1차 평가 우선순위 결과 등 선정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

※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선정평가 기준표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결과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별로 통보(전년도 11~12월)

시·도

- 시·도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선정결과를 시·군에 통보(전년도 11~12월)

- 시·도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 준비(전년도 11~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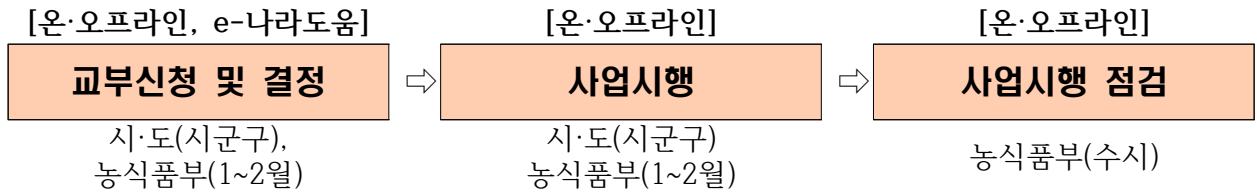
시·군

- 시·군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선정결과를 사업 신청자에게 통보(전년도 11~12월)
- 시·군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비 예산 확보, 전담인력 채용, 인력풀(pool) 확보 등 사업 추진 준비(전년도 11~12월)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단계

〈그림 12.교부결정 및 사업 시행 흐름〉



□ 교부 및 사업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자금 배정신청을 근거로 시·도별 자금 배정(당해년도 1~2월)

시·도, 시·군

- 시·도는 배정자금을 시·군에 재배정하고, 시·군은 사업 대상자(사업시

행기관)별로 자금 배정(당해년도 1~2월) 및 사업 추진(연중)

보조사업자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기관은 사업 추진 및 사업 기준에 따라 사업비 집행(연중)

□ 이행점검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사업 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실시
 - (현장점검) 반기별로 현장점검 추진(전체 농촌인력중개센터 중 10% 범위 내)

※ 보조금 적정 집행 지도·감독 필요성 및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률 제고 필요에 따라 점검대상 범위 확대 실시 가능

시·도

- 광역지자체(시·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시·군·구)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사업 운영 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실시
 - (현장점검)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점검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관내 인력중개센터 중 10% 범위 내)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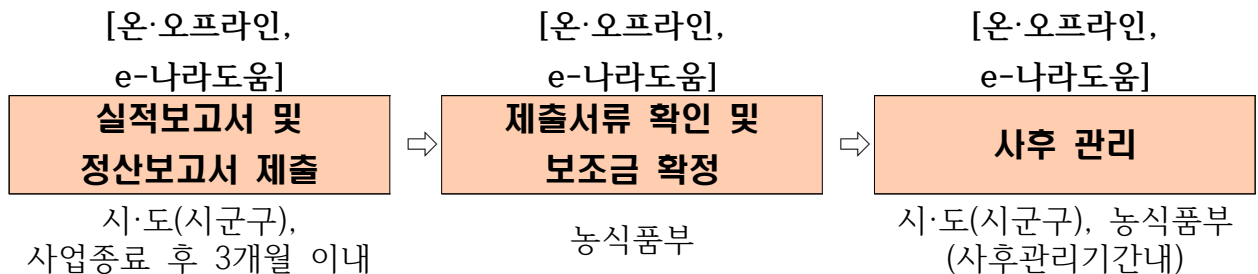
- 기초지자체(시·군·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월 관내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사업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점검 실시
 - (현장점검) 매월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광역지자체(시·도)에 제출(관내 인력중개센터 중 최소 1개소 이상)

보조사업자

-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용목적별로 5년간 기록·유지하고 점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 등)에서 점검, 모니터링 등을 목적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 자료 요구시 이를 제출해야 함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그림 13. 정산 및 사후관리 흐름〉



- (정산시기) 매 연도말(12.31.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되,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정산을 실시
-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농촌인력중개센터)는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매 연도말 기준(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작성하여 제출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는 매 연도말 기준(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정산완료하고 최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기관은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e나라도움을 통해 매 연도말 기준(사업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정보공시 추진
 - ※ 사업신청서, 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역,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보조사업 관련 감사보고서, 보조사업자가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보조금 반환 등

- (불인정 금액)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불인정
 - ※ 부정수급은 아니나 중복지원 등 중복 과오급금 발생 시 중복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 (잔여액 처리) 지원사업의 일부를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부정수급 처분

- 시·도, 시·군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해야 함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위반 등의 행위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법 제311조의3, 제33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조치 실행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때
- 교부 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기타사항

-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보조금 집행 등 운영은 e나라도움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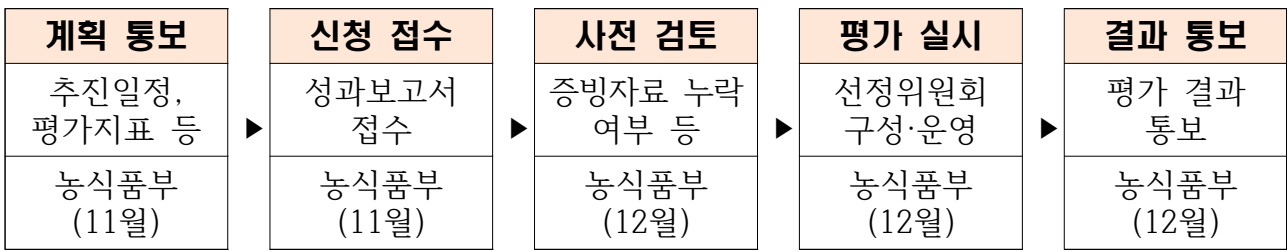
5. 평가 및 환류

□ 사업 평가 및 환류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환류를 위해 당해 연도 사업 성과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통보(당해연도 11월)

※ 평가 대상: 당해 연도 사업에 참여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전체

〈그림 14. 평가 및 환류 흐름도〉



- 시·도는 시·군에 성과평가 계획을 통보하고,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서는 실적보고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당해연도 11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별도의 성과평가위
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성과평가위원회는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
대로 사업 추진실적,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차별화 성과 등 성과평
가 기준에 의거하여 종합 순위 산정
- 종합 순위에 따라 우수 센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장관 표창 등), 미
흡 센터에 대해서는 패널티(감액 등) 부여 등 환류
 - ※ 예시: 예산 집행률 70% 미만 센터 사업비 감액, 50% 미만 및 종합 순위 하위 10%
해당 시 사업 참여 제외 등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센터 예산 추가 배정 등 확정 내시(12월중)
 - ※ 우수 센터는 업무 담당자 워크숍 또는 정책 설명회 등 계기 우수사례 공유

〈표 15. 농업인력중개센터 지정 기준〉

구분	지정 기준
조직	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품목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 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③ 그 밖에 농업고용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예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등) *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야 함
인력	① 농업고용인력 구인·구직, 교육 또는 상담, 작업장 이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담자가 1명 이상일 것 ② 그 밖에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이 1명 이상일 것 *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것
시설 및 장비	① 농업고용인력 구인·구직 등의 상담을 하기 위한 전화 전용회선을 1회선 이상 설치할 것 ② 인터넷을 통하여 구인·구직 등의 상담 또는 일자리 정보 입력을 위한 개인용 컴퓨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것 ③ 농업고용인력지원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을 확보할 것 *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것

제7장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

1. 외국인 농업 근로자 주거정책의 전환

- 2020~2021년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환경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
- 경기도 포천 비닐하우스 사망사고
 - 2020년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시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숙소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 발생
 - 당시 포천지역이 영하 18.6도까지 내려가 한파경보가 내려진 시점이었으며, 난방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 국과수 부검결과 간경화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지만, 외국인노동자 거주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일깨우는 계기
- 전남 광주시 비닐하우스 화재사고
 - 2021년 3월 18일 전라남도 광주시 한 화훼농원 비닐하우스 중 외국인노동자들이 쓰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
 - 화재 당시 비닐하우스 내에는 외국인노동자 14명이 있었으나 근처를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인명피해는 방지
 - 비닐하우스는 1시간여 만에 50m가량 전소되었으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리 전반에 대한 비판 제기

○ 외국인 농업 근로자의 주거시설에 대한 정책 전환

-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의 숙소에 대해서는 고용 허가를 불허

○ 외국인 농업 근로자 주거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 2022년부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시범실시됨에 따라 정부 예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의 계기 마련

2.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전개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지속 확대

- 2027년까지 3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인데, 그 중 5개소는 준공되어 운영 중
- 기숙사 형태는 거점형과 마을형, 그리고 두 가지 유형을 통합한 형태로 진행

○ 지원 대상도 기존의 '지자체에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농협)까지 확대

- 기존 지자체가 직접 기숙사를 신축·리모델링하는 경우만 지원하였으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지원

○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외국인 농업 근로자 숙소는 농축산식품부가 건립을 지원하는 경우 외에, 지자체 자체예산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건립되는 경우로 대별

- 지자체 건립 기숙사의 경우 2026년까지 총 18개소가 건립될 계획으로, 11개소는 이미 운영 중이며, 7개소는 건축 중

〈표 15.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추진 현황(25.3월 기준)〉

		대상지역		사업비	
농식품부 건립 기숙사	1차('22~'23) 10개소	거점형	해남, 영양	개소당 24억원	5개소 준공
		마을형	부여, 청양, 진안, 고창, 담양, 영암, 무안, 거창	개소당 15억원	
	2차('24~'26) 10개소	거점형	김천, 봉화	개소당 24억원	5개소 설계·건축중
		마을형	안성, 당진, 남원, 완주, 문경, 고령, 밀양, 산청	개소당 15억원	
	3차('25~'27) 10개소	유형 통합	충주, 고창, 군산, 남원, 영주, 밀양, 청도, 영천2, 함양	개소당 24억원	사전절차 이행중
			지자체 건립 기숙사 ('26년까지 18개소)	경기 4(양주, 연천, 파주, 포천), 강원 2(철원, 인제), 충북 2(괴산, 제천), 충남 1(논산), 전북 3(순창, 정읍, 임실), 전남 4(함평 2개소 운영·1개소 건축 중, 장성1), 경남 2(하동1, 함양1)	

※ 상기 표에서 밑줄 친 곳은 현재 기숙사가 운영 중인 곳(농림축산식품부<2025년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

3. 외국인 농업 근로자 숙소 유형

1) 신축 기숙사형

○ 2022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대표적인 유형

- 일례로, 2024년 9월 9일 준공된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경우, 총 4층에 연면적 981.9㎡로 원룸 18세대, 교육장, 사무실 등으로 구성

〈그림 16.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은 거점형과 마을형으로 분류
 - 거점형은 120명 내외로 많은 수의 근로자가 머물 수 있고, 마을형은 그보다 적은 50명 내외의 근로자가 농촌 현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
- 장점
 - 기숙사의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신축 기숙사형의 경우, 도심지의 적절한 위치에 자리 잡는 경우들이 많아 생활상의 편의나 근로자의 수송에 편리함 구비
- 단점
 - 신규 부지 확보의 어려움, 입지에 따라서는 주변의 민원 발생 소지도 배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적 어려움과 예산상의 어려움 발생 가능

2) 기존 건물 리모델링 유형

- 대표적인 경우로는 전북 고창군과 경남 함양군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음
 - 고창군의 경우,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2024년 5월에 준공하였는데 연면적 950.4㎡에 지상 4층 규모로 1층에는 공동취사장·샤워실·세탁실·다목적실 등이 있으며, 2층부터 4층까지는 2인실 숙소로 구성
 - 함양군 역시 모텔을 리모델링한 경우로, 지상 3층에 건물의 연면적 669.6㎡로 1층에 사무실, 교육장, 식당, 주방, 세탁실을 두고 있으며 객실 19호실(2~4인 수용)

〈그림 17. 전북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그림 18. 함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 장점

- 폐모텔 등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주차장 등 부속 부지가 확보된 경우가 많고, 이미 건물 골조 및 형태가 갖추어져 있어서 기숙사 준공까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이점 보유
- 기존 건물 중 용도가 폐기된 건물은 협상가에 의해 건물 및 부지 매입이 가능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입지 자체가 주변 민가 등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민원 발생 부담이 적음

○ 단점

- 통상적인 경우에는, 폐모텔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도심으로부터 다소 거리를 두고 있어 입주자들의 생활상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농업근로자를 지자체 구석까지 수송해야 하는 관리기관 입장에서는 접근성 등에 다소간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3) 조립식 주택형

- 조립식 주택지원은 중·소 영세농, 각종 채소 재배지역 등으로 적합한 토지를 보유한 농가에 조립식 주택 설치를 지원하는 방식
- 대표적인 경우로는 강원도를 들 수 있는데, 강원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80억원을 들여 해마다 100동씩 조립식 주택 400동을 설치하겠다는 내용 발표
- 이 사업은 강원지사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 50%와 자부담 50%가 투입되며, 1동의 면적은 20㎡로 1개동 당 2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 등을 구비

〈그림 19. 조립식 농업근로자 기숙사 모델〉



○ 장점

- 조립식 주택형의 장점은 현장인 농가 실정에 맞게 설치가 가능하며, 현장의 특징과 농가의 요구를 접목하여 배치하는 것이 가능
- 광역지자체가 농업근로자 숙소 건립을 추진한다면,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추진이 쉽고,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음

○ 단점

- 가장 큰 단점은 시설 자체가 여러 군데 분포될 수 있으므로, 관리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고, 시설 이용 근로자들의 편의시설이나 생활상의 욕구를 만족시킬 기반시설 구비가 쉽지 않음

4) 폐교 활용 리모델링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경상남도의 69개 폐교를 활용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자는 제안에서 비롯
- 현재 추진사례는 없으나, 폐교가 대부분 마을 속에 위치하고 있고, 넓은 부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면 예산상 이점이나 부지 활용 이점을 취할 수 있는 방안

〈그림 20. 폐교 활용을 위한 모델 예시〉



제8장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³⁾

1. 사업 개요

□ 목적

- 농업 분야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통한 농업 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농업 분야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거주시설 건립 신축비와 개·보수비 지원

○ 지원자격

- 농업 분야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물 사업부지가 확보(소유권, 지상권 등)된 지자체

□ 지원내용

- 사업대상지 내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기반 조성비를 포함한 시설 건축비 또는 개·보수비
- 부지매입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 비용 등은 지자체 부담

3)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서 전제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시·도에서는 시·군·구가 제출한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 전국 시·군·자치구, 이하 지자체 또는 시·군·자치구라 함

-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과 범위: 동 사업은 농업 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건축물 건립 사업으로 사업 신청 전 사업부지(소유권, 지상권 등)가 미확보된 지자체는 참여할 수 없음

국고보조금법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지원대상

○ 외국인 또는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근거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농업식품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 육성), 「농어업인 삶의질법」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 육성) 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분야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거주시설 건립 신축비와 개·보수비 지원

- 사업대상지 내의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기반 조성비
- 시설 건축비 또는 개·보수비, 주거 안전 및 편의 관련 기자재 구입·설치비

※ 부지매입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에 따른 비용 등은 지자체가 부담, 시설운영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조례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 기준 및 사업규모(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규모 : 개소당 24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유형별 공통 지원 조건

- 지자체 부지확보(소유권 지상권 등) 후 사업 신청, 시설관리계획 마련 및 관리 운영(부지매입, 시설 유지 보수·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

- 에너지 절약형 주택, 태양광 발전 도입 및 시설 이용자와 인근 주민들이 교육·문화·여가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편의시설 포함 설치 권장
- 상기 지원 기준 및 사업 규모 등은 국회 예산 확정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기간 : 사업 개시연도부터 3년간(예산: 1차 10%, 2차 45%, 3차 45%)

○ 시설 기준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제58조(기숙사의 면적),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등 준수

○ 시설 이용대상

- 농업 분야 외국인·내국인 근로자
- 공공형 계절근로 등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절대 사용 불가

3.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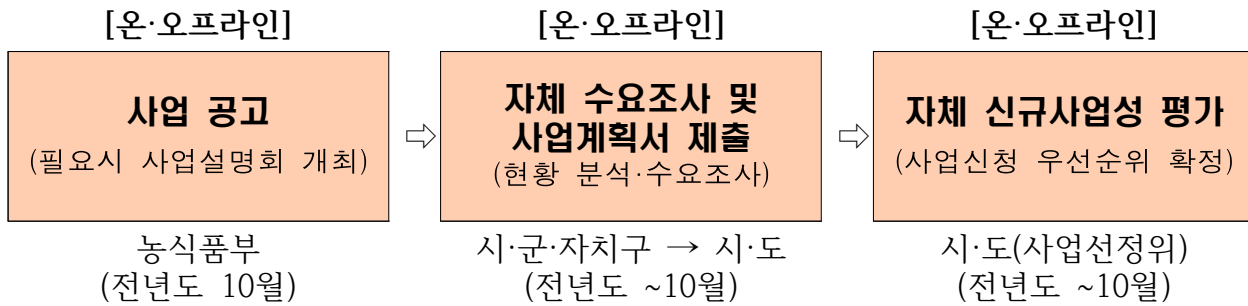
〈그림 21.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 체계〉



* 상기 일정은 '25년 정부 예산 확정 등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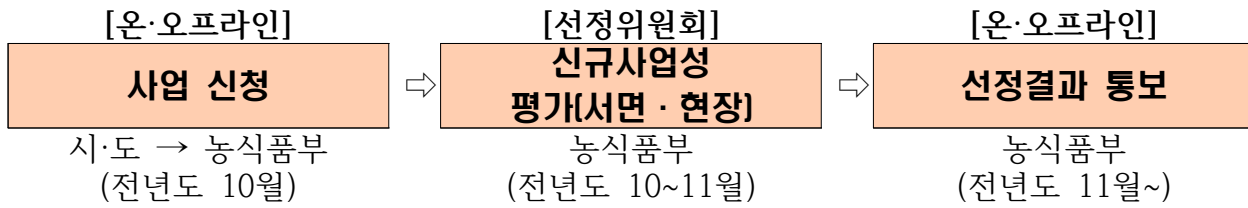
〈그림 20. 농업근로자 기숙사 사업신청 흐름도〉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 및 시·군·자치구 대상으로 사업추진계획 (시행지침안, 공모 계획안 등)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자치구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군·자치구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본 사업의 시급성·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기획
 - ※ 농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출퇴근 등), 정주·복지·문화·여가(커뮤니티) 등 검토
 - 시·군·자치구는 부지 선정 시 지역 주민,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지 확보
 - ※ 부지가 시·군·자치구·국유지일 경우, 소관 기관과의 협의 내용, 확보 비용 및 일정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 사유지일 경우, 취득방법(협의 매수/수용), 소요(예상) 비용(감정평가액), 취득절차·일정(토지매매 계획서 등)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시·도는 자체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자치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신규사업성 검토 및 사업신청 우선순위 확정

2) 사업자 선정단계

<그림 23. 농업근로자 기숙사 사업 선정 흐름도>



○ 시·도에서는 자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타당성, 자금지원 우선 순위를 평가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 선정위원회 구성원 중 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 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농식품부는 5인 이상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서면평가·현장실사 등을 종합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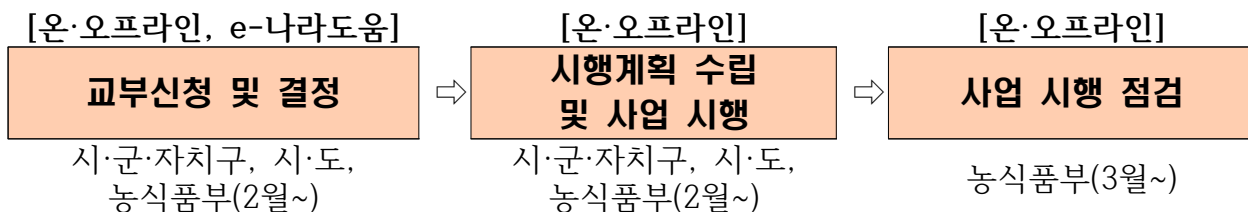
※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2조(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 준수

- 농식품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의가 확정되면 시·도(시·군·자치구)에 통보

※ 지자체 수요와 선정위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조건부 선정 가능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그림 24. 농업근로자 기숙사 사업 시행 흐름도>



- 농식품부는 이하 시·군·자치구(시·도)에서 제출한 계획 검토 및 승인
 - 제출된 계획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계획을 반려하여 수정 제출 요구 또는 사업대상자 지정 취소
- ※ 당초 선정 취지 및 사업목적에 현저히 미달, 제시된 일정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등
- 농식품부는 시·군·자치구(시·도)에서 제출한 계획서 및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군·자치구(시·도)별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농식품부는 시·군·자치구(시·도)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를 통지하고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1차 연도 전반기 내 지방비 미확보, 사업 착수(설계, 설계 공모 등)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가능
- 시·군·자치구는 사업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협의 후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승인과 보조금 교부 요청
 - 시행계획은 농식품부의 선정위원회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립
- 시·군·자치구(시·도)는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보조금 교부 신청하며, 승인내용에 따라 주요 내용을 고시하고 사업 발주 등 공사 착수
- 시·군·자치구는 사업대상지, 사업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도와 협의

의 후 농식품부에 승인 필요(단, 계획된 사업기간 내 사업 완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 등 부지의 위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모두 준수한 경우에만 가능
- 사업비는 국비 기준 사업비의 30% 이상이 변경되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와 협의, 승인 후 변경 가능함

○ 시·군·자치구(시·도)는 사업비 집행 시에는 아래 규정 등을 적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국가·지방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 시·군·자치구(시·도)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민원발생, 보조금의 부정 집행 의심, 사업 지연, 사업 목적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점검 실시

4) 이행점검 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전반(공사 상황, 진척도,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하여 매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연2회 이상 현지점검 실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시·군·자치구(시·도)는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이상 유무 및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

- 시·도는 반기에 1회 이상, 시·군·자치구는 분기에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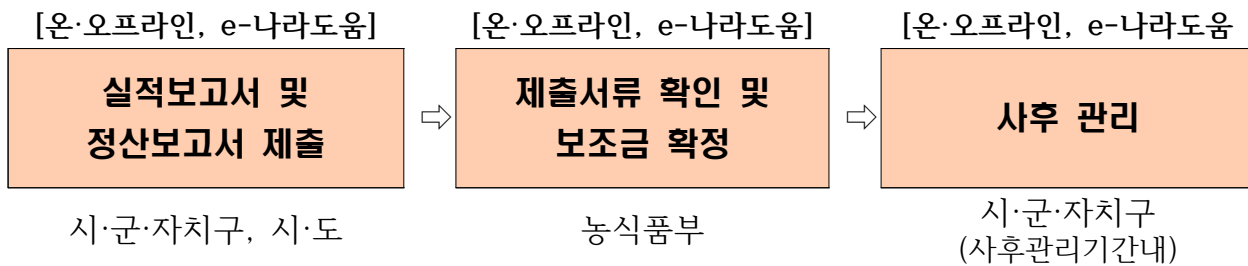
- 시·군·자치구는 분기별 추진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 및 사업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매 분기별 추진·점검 실적 제출

○ 시·군·자치구(시·도)는 지역사회 갈등·민원 여부 등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조치 결과는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5) 정산 단계

〈그림 23. 농업근로자 기숙사 사업 정산 단계 흐름도〉



○ 농식품부는 시·군·자치구(시·도)의 정산 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법령, 교부 결정 내용 등 지자체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 후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된 후 통지

-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만일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농식품부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장 등에서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농식품부(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검사시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준수

-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 보조사업 수행에 관하여 농식품부 장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농식품부 장관의 명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는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함
- 시·군·자치구는 보조금으로 중요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 통합 관리망에 등록

-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필요시 지상권 포함)

※ 보조금법 제35조의2(중요자산의 부기등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자산의 등록 등), 제70조(중요자산의 사후관리) 준수

- 시·군·자치구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정산시 보조금 잔액과 함께 반환하여야 함

6) 사후관리단계

- 농식품부는 시·군·자치구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교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회적 경제조직, 농업인단체 등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가능 (조립주택형은 제외)
- ※ 사회적경제조직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도시재생법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표 16. 농업근로자 기숙사 사후관리 기준〉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등) * 조립주택형은 제외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부동산(조립주택형)	준공일	7년간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500만원 미만 구입한 냉장고, TV 등 생활 편의시설의 소모성 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시·군·자치구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 반기별로 전수

점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법령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며, 점검 및 조치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는 시·군·자치구가 보고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사후관리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 반기별로 현장점검을 하여 시·군·자치구의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 후 농식품부에 점검결과를 보고

- 농업 분야 근로자를 위한 시설임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7) 제재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제재

※ (부정수급 사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원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등

※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 포기, 1년 이상 사업 미추진 등

8) 기타

- 본 사업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가지방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름

4.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완료시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완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추진완료보고서 제출

2) 평가

- 사업 시행 시·군·자치구의 사업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
 - 건립사업 실적·현황, 시설활용, 홍보노력 등

3) 환류

- 시설 운영·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 사항 등을 시·군·자치구(시·도)에 통보

제9장 공공형 정책 도입을 위한 조세 검토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조세 현황

1) 법적 근거 및 현황

○ 법적 근거로는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지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군 조례로 대별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최근까지 법무부 지침과 전국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시행, 표준화되지 않고 운영되는 관계로 현장 상황에 따라 혼란 발생
- 전국 83개 시·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9개 시군에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그리고 36개 시·군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은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과 관련 있는 조례의 명칭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제각각

- 이밖에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등 광역 지자체에서도 ‘농어촌 인력지원에 관한 조례’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중
- 2023년 1월 26일 제1차 대한민국 시도의회협의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
- 국회에서는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개정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 중에서 「출입

국관리법」 개정안은 2025년 7월 3일 통과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

2) 경상남도 고성군의 관련 조례 현황

- 고성군 의회는 2024년 4월 19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동년 5월 10에 제정
 - 이 조례는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과 고용 촉진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인력 지원 방안을 규정
 - 동 조례는 고성군 내 농어업인력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내용은 제2조(정의) 4항, 제4조(농어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항, 제7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명시
- 2024년 9월 고성군의회에서는 김향숙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현행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만으로는 고성군의 영세 농가나 소규모 농가의 계절적 인력난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
 - 이후 고성군의회에서는 공공형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선진지 견학 및 사례 연구 등 실증적 모색 등을 통해 군 차원의 정책 도입 및 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

2. 여타 ‘모범적’ 군부 지자체의 관련 조례 검토

1) 경남 거창군

- 거창군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은 2024년 정부평가 5관왕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으며 우수성 입증
 -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 정부혁신 왕중왕전 장관상 ▲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위원장상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행정 유공 기관 장관표창 ▲ 경상남도 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등
 - 그동안 MBC, KBS 등 공중파에 9차례 소개되었고, 2025년 중순까지 전국 지자체와 의회 30개 단체 이상이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
- 거창군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로 법제화
 - 조례 내용은, 14조목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의 구성과 회의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재정지원 항목 등으로 구성

사례 1-1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 2023. 3. 29.]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762호, 2023. 3. 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을 위해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한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거창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 시책 및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 훈련
4.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과 지원
5. 농촌 일자리의 홍보와 정보제공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와 활용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운영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 농작업의 구인·구직 확대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확보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촌일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인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나. 농촌인력 중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농촌일손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2조(농촌인력중개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중개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표준안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운영
9.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센터의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 13조(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등 주거환경 개선
2. 농촌인력난 해소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 출장 시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산업재해 및 상해 보험료
 - 나.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물품
3. 내국인 고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 나. 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이용할 경우 식비

③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에 드는 비용

3. 감염병 방역 및 격리 비용, 의료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14조(지원 신청 등) ①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2762호 전부개정202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시고용인력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인력중개센터로 본다.

- 거창군은 ‘공공형’ 정책의 핵심인 계절근로자 숙소 운영을 위해,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와 별도로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기숙사 운영을 법제화
- 총 8조목과 부칙으로,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입주 대상 및 우선순위, 입주 신청 및 결정, 이용료 산정 기준, 퇴거 및 이용 제한 등을 규정

사례 1-2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1. 20.]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885호, 2024. 11. 20., 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조성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근로자”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외국

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제3조(농업근로자 기숙사)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주거시설
2. 관리사무실, 교육장 등 공용시설

② 기숙사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3길 36에 둔다.

□제4조(입주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기숙사의 입주 대상은 농업근로자로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 결정에 있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농업근로자의 입주를 우선 할 수 있다.

□제5조(입주 신청 및 결정) ① 기숙사에 입주하려면 군수에게 입주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제6조(이용료 기준 및 면제) ① 군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식비 징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숙사 이용료를 정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 국가의 관계자가 관련 행사·교육·파견 등에 참여하기 위해 군을 방문할 경우 기숙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퇴거 및 이용제한)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입주 요건을 위배한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인 경우
4. 기숙사에서 폭행·성폭력 등 형사입건 대상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기숙사규칙 위배 등 기숙사 운영상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숙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2885호 제정 202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아울러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도 제정
 - 총 4조목과 부칙으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련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입주 신청, 이용료 선납 및 산정 기준, 퇴거 등에 대한 원칙을 보완

사례1-3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11. 20.] [경상남도거창군규칙 제1403호, 2024. 11. 2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 신청)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이용료 선납 및 산정기준) ①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 전에 기숙사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기숙사 이용료에는 입주자가 기숙사를 이용한 금액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하수도 요금 등의 시설유지비 등을 포함한다.

□제4조(퇴거)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해야 한다.

□부칙(규칙 제1403호 제정 2024.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입주신청서).hwp

2) 전북 고창군

- 전북 고창군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지난 7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장 시찰에 나선 모범적 사례
 - 고질적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넘어, 체계적인 인력중개 시스템과 복지 지원까지 갖춘 ‘고창형 모델’이 주목
- 2025년 고창군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약 3,000명으로 전국 최다
 - 전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공공형 55명을 포함한 총 2,500명으로, 현재 570농가에 배치되었고, 하반기에도 500명이 추가 입국할 예정
- ※ 2022년 300여명이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3년 600여명, 2024년 1800여명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
- 전북 고창군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법제화
 - 조례 내용은, 8조목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인력난 해소 문제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를 부분으로 다룬 거창군 조례와는 달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으로 특정하여 조례를 제정
 -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계획 수립, 사전 이행사항에 대한 규정, 전담인력 배치 문제, 재정지원과 지도 점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도 명시

사례2-1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29.]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조례 제2579호, 2021. 12. 2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파견근로 사업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파견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제4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통·번역료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6. 파견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창군의 경우에도 ‘공공형’ 정책의 핵심인 계절근로자 숙소 운영을 위해,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기숙사 운영을 법제화

- 총 23조목과 부칙으로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규정
- 위치, 입주 및 입주자와 관련된 각종 조항, 관리자와 관련된 규정, 수탁자 선정방법과 수탁자의 행위금지 조항, 감독과 배상책임, 기타 사항의 준용 근거, 시행규칙 제정에 이르는 전반을 조례로 규정

사례2-2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3. 12.]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조례 제2781호, 2024. 3. 12., 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조성을 위하여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고 한다)에 입주한 농업근로자(이하 “입주자”라고 한다)가 입주 기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치) 기숙사는 고창군 관내에 둔다.
- 제4조(입주정원)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제5조(입주대상자)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고창군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조합에 고용되는 농업근로자(“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입주신청)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근로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숙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① 군수는 제6조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여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5일까지 납부하되, 중도 퇴사(退舍)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퇴사(退舍)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퇴사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退舍)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退舍)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退舍)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退舍)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환자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退舍)가 불가피한 경우

□제10조(기숙사 운영수칙)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 「고창군 공무원직근로자 관리 규정」, 「고창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①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법인·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직·정원·장비·시설·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④ 위탁 공고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재정운영) ① 군수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숙사 운영 비용은 군비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 선정방법) 기숙사의 수탁자 선정방법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5조(위탁계약 체결)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기숙사의 기구, 정원, 입주자의 사용료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7조(수탁자의 행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 외 사용 행위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담보물권, 용익물권 등의 권리물을 설정하는 행위
6.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 이외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기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행위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 18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기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9조(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0조(손해보험·계약체결)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숙사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한 경우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준용)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24. 3. 12. 조례 제2781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입주신청서).hwp

○ 고창군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를 보완하는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운영

- 총 10조목과 부칙으로,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 입주자 설비, 입주자 선발, 위탁 운영 및 계약, 부담금, 안전수칙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사례2-3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7. 1.]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규칙 제1279호, 2025.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입주자 선발) ①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 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수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 시설 운영의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3.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보유현황 및 재정부담 능력
4. 그 밖에 위탁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탁자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탁 재산, 기간,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3. 위탁료, 사용료, 운영비 및 필요한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부담금)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 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와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9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2024. 5. 1. 규칙 1244호 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7.1. 규칙 제1279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hwp
- ⊕ [별표 2]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담금.hwp
- ⊕ [별표 3]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안전기준.hwp
- ⊕ [별표 4]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수칙.hwp
- ⊕ [별지 제1호서식]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hwp
- ⊕ [별지 제2호서식]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hwp
- ⊕ [별지 제3호서식]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위탁운영 신청서.hwp

3. 고성군의 조례 제·개정 방향 검토

- 현재의 조례 제정의 목적이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형’ 제도를 채택할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이나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
 -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나 전담인력 배치, 재정 지원의 구체 항목에 주거시설 등과 관련된 항목의 추가와 지도·점검 항목의 추가하는 방안 검토
- 고성군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할 경우, 농촌인력 관련 현행 조례 개정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와 관련된 별도의 조례 제정 병행이 필요
 - 숙소(기숙사)의 입주 대상 및 우선 순위, 이용료 기준 및 면제, 퇴거 및 이용 제한, 위탁운영 관련 사항들을 별도 조례로 제정해야 할 사항

제10장 검토 및 제안

핵심 포인트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추진은 고성군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
 - 무엇보다 중요한 첫 매듭은 공공형 정책의 운영주체가 될 법인의 선정
- 고성군형 공공형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운영주체가 되는 법인의 추진의지, 고성군의 정책적 뒷받침, 고성군의회와의 조례 제·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이라는 삼박자의 협조가 관건
 - 삼박자 중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운영주체가 될 지역농협의 결단과 추진 의지**
 - 이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는 고성군청, 농협, 고성군의회와의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방안 강구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운영 방안 : 농가형과 공공형의 장점 믹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명칭상 농가형이든 공공형이든 비슷한 것 같지만, 실상은 매우 다른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는 별개의 정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대상 농가의 농작물과 수확 주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의 조건과 요구 사항, 계절근로자 관리의 주체와 항목, 기타 업무 협조 체계와 여타 지자체와의 협조관계 구축 여부 등이 크게 상이

- 각 지자체의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보다 많지만, 실상 혜택을 보는 농가수와 그 파급효과는 공공형이 훨씬 더 큰 실정
 - 경남 함양군의 경우, 공공형 계절근로자 42명에 농가형 계절근로자 350~400명을 병행해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1,385농가에 4,366명을 지원하여 농가 만족도 제고
 - 경남 거창군 또한 농가형 계절근로자 600~700명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70명으로 병행해서 운영
 - 전북 고창군은 상반기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55명을 포함, 2500명이 입국해 570농가에 배치되었고, 하반기에도 500명이 추가로 입국하여 전체 3000여명의 근로자 투입
- 공공형을 위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과 별개로 기존의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그대로 추진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 농가형의 운영기관인 고성군청의 행정적 뒷받침은 그대로 지속하면서, 공공형의 운영주체가 되는 농협 등 협력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름길

□ 공공형 기숙사 건립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한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추진은 방향 자체로선 바람직하나 공모대상으로 선정되어 실제 운용에 착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 공모를 위해서는 기숙사 부지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고, 운영주체 선정 및 조례 제정 등 정책 추진 환경이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공

모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을 보면, 현재 3차분 (2025~2027년)이 사전절차 이행 중이므로, 고성군이 당장 착수하더라도 2027~2029년의 5차분으로 갈 수 있어 최소 5년 정도의 시간 소요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련 공모는 통상 10~11월에 절차가 개시되므로 빨라야 내년 말에나 공모 지원 가능할 것으로 사료
 - 고성군의 81.6%에 이르는 영세농 및 소농의 일손부족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추진과 별개로 보완적 시책 추진이 긴급
-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 공모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경우 2027년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고, 특히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빠르면 2028년 중에 공공형 사업 추진이 가능
 - 경남 함양군의 폐모텔 리모델링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뿐 아니라 외국인 체류인구 증가를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효과도 거양

〈그림 26. 정부 공모사업의 전략적 시기 안배〉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농업근로자기숙사도 복수로 확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단기적 처방과 중기적 처방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으로 예산 집행효과가 신속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공모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추진한다면, 현장의 요구에 맞게 시기적으로 효과적인 정책 믹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의 담당 부서가 상이하기 때문에 군청 내부에 적절한 협조체계 구축이나 TF 구성 필요

□ 정책 추진 시기의 문제

○ 공공형 제도의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농업근로자기숙사 예산을 지방소멸기금투자계획을 통하든,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를 통하든 착수 시기를 잘못 계산하면 한 해를 또 보내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상황

○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 관련 시기 계산은 9월 초 현장실사를 기점으로 역순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

-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을 광역 시·도에 제출하는 시기는 7월 초쯤으로, 5~6월 경에는 투자계획 제출을 위한 사업의 세부 개요 및 대상 부지 등에 대한 정책검토가 완료되어야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은 사업신청 및 사업선정이 10~11월 경에 이루어지나,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전제조건이 부지 매입 등이므로, 실제 공모 준비는 적어도 1년 전쯤부터 착수하는 것이 현실적

- 농업근로자기숙사 부지 매입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안이고, 또 운영주체가 될 농협과의 협조도 필수적이므로,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는 전년도부터 검토에 착수해야 할 문제
- 결과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든 올해 안에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준비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
- 당장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응할 준비가 어렵다면,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포함시킬 정책 방향과 투자 계획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

□ 공공형 정책 추진을 위한 운영기관 지정 문제

- 현재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을 보면, 현재 총 517명 중 영오면이 223명으로 43.1%를 차지하고 있고, 고성읍이 92명으로 17.8%, 구만면이 57명으로 11.0%, 개천면이 40명으로 7.7%를 차지
- 현행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 상 동고성농협(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면) 담당지역이 가장 큰 역할 수행
 - ※ 고성군 내 단위농협은 고성농협(고성읍·대가면), 새고성농협(삼산·하일·하이·영현면), 동고성농협(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면), 동부농협(동해·거류면) 4개로 구성
- 공공형 정책의 경우, 농가형 정책의 인력운용과는 다른 기준과 고려가 필요한 상황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주체 문제는, 농가가 아니라 고성군 전체의 효율성과 고성군 당국의 정책 지향 및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와 접근이 필요
 - 통상적으로 다른 군부 지자체처럼 농가형과 공공형 제도를 병행해서

갈 경우에는 농가형 제도까지 고려한 운영주체 선택이 더 중요

- 농업근로자 기숙사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같은 공간에 배치하는 문제, 고성군 당국과 운영기관(농협)의 업무협조체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중심이 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입지를 고성군의 중심에 두는 방안이 현실적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가 수송 편의, 기숙사 관리의 편리성과 기숙사 거주 외국인의 생활 편의성, 기숙사 및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을 위한 군청과 농협의 협업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고성군의 4개 농협의 긴밀한 협조가 긴요
- 함양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협의 공동조합법인으로 가는 방안도 검토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관련 보완 방향

- 공공형 제도를 채택한 다른 군부 지자체 대부분이 농가형 계절근로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그리고 내국인 근로자의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병행
- 각각 운영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농협, 협동조합이나 공동조합법인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사실 농가의 필요성이나 행정적 편의를 고려하면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
- 일례로 거창군은 농촌인력 지원사업의 기능을 통합하여 지원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7~8명의 근무인원으로 계절근로자 고용상담, 모니터링, 비자발급 지원, 통역지원, 내·외국인 근로자 농가 배정, 근로자 수송 등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

<그림 27. 농촌인력통합지원센터 개념도>



- 고성군의 경우 농업인력중개센터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공형 정책 추진과 동시에 구성 인력 및 운영형태를 확대 개편하고, 이를 농업근로자 기숙사와 동일한(혹은 근접한) 공간에 배치하는 방안이 효율적
- 각각 운영주체가 상이하더라도 어차피 공공형이나 농가형 정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조가 불가피하고,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가 필요한 농가의 입장에서는 따로 운영하거나 운영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더 불편

□ 공공형 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팀 구성

- 공공형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전담팀 신설이 필수
- 농가형의 경우, 운영주체가 농가가 되고 숙소 및 임금 지급의 당사자도 농가가 되므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입·출국 지원과 행정적 지원에

국한하여 필수 인원만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

- 그러나 공공형 채택 시 지자체 관계자, 농협 관계자 외에 외국인 선발이나 관리, 농가 수송 등의 필요에 따라 통역직원이나 공무원, 외국에서 파견 나온 관계자 등의 업무조합이나 종합적 관리역량 구축 필요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팀의 문제는, 좁게는 지자체 내에 전담팀을 구성하는 문제이며, 좀 더 적극적으로 확장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운영과 관련된 전반, 또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팀을 포괄하는 영역
- 고성군 자체 측면에서 보면, 정책 전반에 걸쳐 고성군의 관리 책임 및 정책 추진 책임이 부과되고, 법적으로도 조례에 기반한 지자체장의 역할과 임무가 있으므로 소극적 의미의 인력만으로는 한계 봉착 가능성
- 특히 정책 도입 과정 관리와 운영주체 선정 등 초기 역할을 위해서라도 전담팀 구성은 불가피
- 정책 방향 결정(농가형과 공공형 병행 등), 공공형 제도 채택을 위한 행정적 준비 및 지원, 공공형 정책을 운영할 기관 결정 협의, 의회와의 협조를 통한 법적 기반 마련, 운영 로드맵 설계, 주변 지자체와의 협조 및 상생 방안 추진, 관련 공모사업 준비 등이 필요

□ 조례 제·개정 방향

- 고성군은 현재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2024.5)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례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에만 초점을 맞춘 새로운 조례 제정이 더 바람직
- 현재 조례는 고성군의 농어업 인력난을 포괄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포함은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공공형을 뒷받침하기에는 매우 제한적

※ 제2조(정의), 제4조(농어업인력지원계획 수립·시행), 제7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항으로 국한하여 규정

- 여타 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운용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괄하여 법적 기반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운영계획 수립 관련 지침, 사전 이행 사항, 전담인력 배치, 재정 지원, 지도 및 점검, 시행규칙 제정 등을 명시
- 이와 동시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 운영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고성군이 신축 기숙사든 리모델링이든 법적인 기반을 갖추는 것이 선결 조건
 - 입주 대상 및 입주 우선순위, 입주 신청 및 결정, 이용료 산정기준, 퇴거 및 이용 제한 관련 내용을 규정
- 조례 제정 및 개정 이후 구체적인 법적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보완
 - 입주 신청이나 이용료 선납 및 산정기준 등을 필요에 따라 명시

□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1 임금정책 관련 검토

-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지급 방식으로는, 일당형과 월급형으로 분류 가능

- 많은 지자체에서 월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거창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당제 시행
- 현재 제도 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일당제가 월급제에 비해 농가부담이 약 10% 정도 저렴한 것이 사실

※ 공공형 정책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일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창군의 하루 일당은 약 8만 1천원 가량이고, 월급제를 시행하는 함양군은 주급 1일을 포함하여 하루 약 9만 6천원 가량 지급

- 농가 부담이 적은 거창형 ‘일당제’ 채택에 대한 법적 논란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으나, 현행의 법체계에 비추어 뚜렷한 지침이 없으므로 일단은 농가 부담이 덜한 일당제 유력 검토 필요
 - 「근로기준법」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명확한 조항이 없고,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상으로도 이에 대한 기준 불명확

2 외국인 근로자 현지 선발 문제

- 농가형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현지에서 선발 파견하는 방식은, 현지 브로커들의 개입 등으로 파견된 근로자의 국내 체류에 역기능 초래 가능성
 - 과도한 브로커 비용을 지출하고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농가가 지불하는 임금만으로 경제적 압박을 견디기 힘들어 무단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
 - 현행 방식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현지 실태나 애로사항, 정서 등을 세심하게 고려한 인원 선발을 할 수 없다는 단점도 부각
- 고성군청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

발 과정에서부터 참여하여 [선발-입국-교육 및 관리-출국]까지를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체제 구성이 바람직

- 현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서와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고성군 농가에 알맞은 인력들을 세심하게 맞춤형으로 선발하는 체제 구축

3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가진 단기 노동의 이점을 살려 인력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와의 인력교류 협력 추진이 바람직

- 현재 고성군 인접 지자체 중에 공공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의령군 정도에 불과하고, 거창군이나 함양군 등은 거리가 멀어 여건 불충분

○ 고성군 인접 시·군 중에 공공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으나, 우선 한 두 곳이라도 인력교류 협력을 맺는다면, 향후 확대추진의 동력으로 작용

- 주변 지역에도 농가형을 실행하고 있는 지역이 많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공공형 채택의 요구가 분출될 수 있으므로, 향후 상호보완적인 지역과는 인력교류 협력을 구축할 여지가 다분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연구용역

발행일 2025년 10월

발행기관 고성군의회

발행처 고성군의회

(5293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13

Tel: 055-670-5755

연구기관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여의도동)

Tel: (02) 785-6070 Fax: (02) 785-5150

E-mail: koris@koris.or.kr